희망서울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협동조합 상담사례집

상담사례로 배워보는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서울특별시

희망서울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협동조합 상담사례집

상담사례로 배워보는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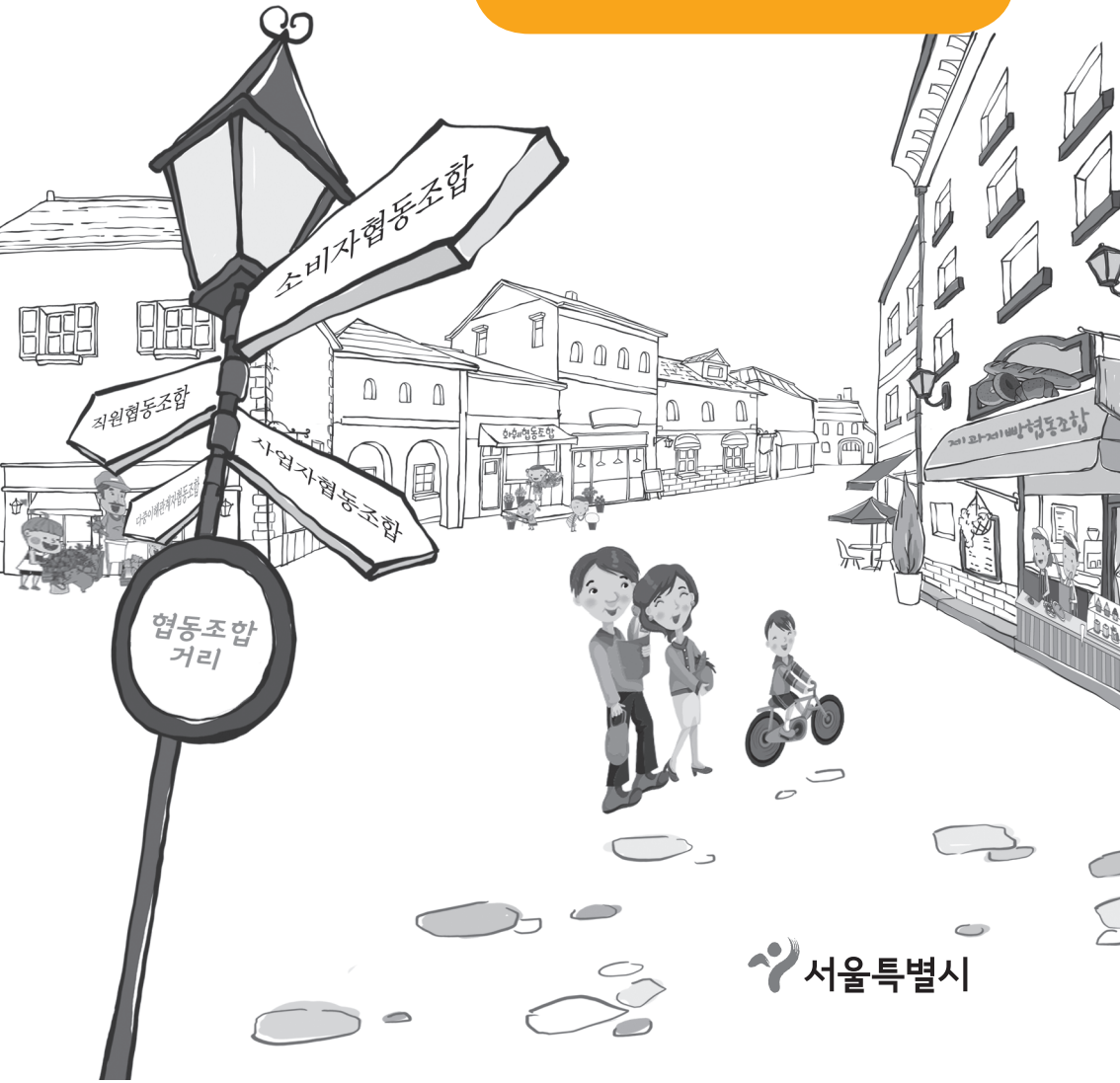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CONTENTS

01 협동조합의 이해

02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현황

03 서울시 협동조합 설립현황

04 협동조합 상담사례

협동조합 설립준비 / 26
- 명칭 / 26
- 조합원 / 30
- 임원 / 38
- 주사무소 /42
- 정관 / 43
- 창립총회 / 49
- 업종 / 56
- 유형 / 65

신고절차 / 83

등기절차 / 88

사업자등록 & 영업신고 / 95

운영 / 96
- 변경 / 96
- 출자금과 지분 / 99
- 사무소 / 102
- 배당 / 103
- 조합원(제명, 탈퇴) / 106
- 정기총회 / 108
- 사업 / 110
- 관리 감독 / 117
- 임원과 직원 / 118

연합회 / 124

전환 / 126

해산 / 132

05 부록

일반협동조합 신고 관련 양식 / 136
- 설립신고서 / 136
- 사업계획서 / 137
- 정관변경신고서 / 140
- 해산신고서 / 141
- 임원 명부 및 이력서 / 142

상담사례로 배워보는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협동조합 상담사례집

– 설립동의자 명부 / 144
– 수입지출 예산서 / 145
– 출자자 명부 및 출자액 / 146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147
설립신고서류 작성 사례 / 148
– 정관 주요 조항 / 148
– 사업계획서 / 152
– 창립총회의사록 / 157
참고 양식 / 160
– 설립동의서 / 160
– 출자금 증서 / 161
서울시 및 자치구 협동조합 담당부서 / 162
정부 협동조합 담당부처 / 163
협동조합 유관기관 및 지원기관 / 165
협동조합기본법 / 166
협동조합기본법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기준 / 226

06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1년을 돌아보며
–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운영자 소감 / 232

Cooperative

01

협동조합의 이해

협동조합의 이해

1. 협동이란 무엇인가?

옛날부터 전해내려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극락(천당)과 지옥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부처의 제자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부처가 그를 먼저 지옥세계로 데려갔더란다. 지옥이라서 아주 비참한 곳일 줄 알았더 의외로 그렇지가 않았다. 식당에 가보니 음식이 잘 차려져 있는데, 사람들의 손에는 길이 2미터가 넘는 긴 숟가락과 젓가락이 고정되어 있었다. 그 곳 사람들은 긴 수저로 밥을 떠서 자기 입으로 가져가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니, 국과 밥을 온통 흘리고, 안타까운 마음에 더욱 용을 쓰니 수저로 옆사람을 찌르게 되고 서로 부딪히며 신경질을 내고 악다구니를 쓰며 싸우고... 결국 사람들은 밥알 한 톨도 먹지 못하면서 아비규환을 이루더란다. 그래서 이번에는 극락세계로 가 보았다. 그곳은 지옥과 똑같이 생겼고 긴 수저를 사용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곳 사람들은 자기의 긴 수저로 뜬 밥과 국을 자기 입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으로 가져가 먹여 주고 있었다. 서로에게 사이좋게 먹여주니 너나 할 것이 없이 모두가 평화롭게 배불리 먹고 있었다.

협동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위의 이야기에서 극락과 지옥의 사람들의 상황은 똑같다. 다만 그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나 혼자만 살려고, 나혼자만 배부르려고 한다면 모두가 비참한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다. 내가 살려면 먼저 이웃과 친구를 생각해야 하고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위의 예화를 정리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유익한 행동을 함으로써 결국 나에게도 유익한 결과가 돌아왔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협동이고 협동조합의 기본원리이다.

2. 세계 협동조합의 역사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전, 유럽에서는 '자본주의'라는 것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생활이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기계들이 발명되고 공장이 생겨났다. 농촌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면서 노동자가 생겨났다. 이런 상황에서 돈이 있는 자본가들은 공장등을 세워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었고 반대로 노동자들은 더 적어진 임금, 평균 18시간의 노동시간, 점점 더 강해지는 노동강도로 인해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다.

설상가상으로 가난한 노동자들은 주식인 빵을 먹기 위해 밀가루를 사서 빵을 만들어야 했는데 시장에서는 밀가루에 석회나 모래등 이물질을 섞고, 용량을 속이고, 가격을 속여 팔기 일수였다. 생활필수품인 버터나 설탕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844년 영국의 로치데일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새로운 시도가 일어났다. 28명의 가난한 노동자들이 밀가루 같은 생필품을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공동의 가게를 열기로 한 것이다. 각자 1파운드씩(현재의 가치로는 약 50만원 정도)을 모아 점포를 만들고 정품과 정량의 물품을 정가에 팔기 시작했다. 신뢰할 수 있는 물건을 팔기에 많은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점포를 이용했다. 그래서 로치데일협동조합은 처음 28명으로 시작해서, 2년만에 조합원 수가 600명으로 늘어났고 취급하는 물품도 고기(정육점), 신발, 양복, 가구 등으로 다양해졌다. 그리고 그동안 밀가루를 구입해서 팔던 방식을 바꿔 밀가루를 직접 생산하는 제분공장을 설립하게 된다.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받아 별도의 제분공장 협동조합을 차린 것이다. 이렇게 되니, 소비자협동조합에서 공급하던 밀가루의 품질도 더욱 확실하게 관리되고 가격도 더 낮출 수 있게 되었다.

로치데일 소비자협동조합이 성장발전하면서, 그 물건들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자들의 협동조합도 생겨났다. 예를 들면, 신발 만드는 기술자들 모여

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 생산품을 다른 협동조합에 공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협동조합은 세계 각지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설립발전하였다. 프랑스에서는 노동자협동조합이, 독일에서는 신용협동조합이, 이탈리아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이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발전하고 있다.

3.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역사

자조와 협동을 원리로 하는 공동체가 우리나라에 예전부터 있었다. 계, 두레, 품앗이 등이 바로 그것이다.
실제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의 조직이 생겨난 것은 일제시대이다. 당시 일본제국주의 세력이 식민지 통치를 위해 만든 관제 협동조합과 민족주의에 바탕을 두고 민간이 스스로 만든 자주적 협동조합들이 있었다. 이후 박정희 군사정권은 관치금융의 필요성 때문에 1961년 농업협동조합법을 제정하고 종합농협을 발족시켰다.
이즈음 순수한 민간운동 차원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는데 하나는 1960년 한국 최초의 신용협동조합인 '성가신용협동조합'이 부산에 설립되었다. 이후 여러 지역에서 신협이 설립되었고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되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협동조합은 청십자의료협동조합이다.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은 1968년 5월 13일 장기려 · 채규철 등 부산시 내 그리스도교도를 중심으로 700여 명의 회원이 창립 총회를 가진 후 '청십자의료협동조합'으로 출발했다. 그후 스웨덴 아동구호연맹에서 조직했던 '부산의료협동조합'과 통합해 1969년 7월 보건사회부로부터 사단법인으로 인가받았고, 자영자의료보험시범사업장으로 지정받아 국고에서 일정액의 지원도 받게 되었다.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은 21년간 약 53만 명이 신규가입했으나 약 30만 명

이 중간에 타의료보험 편입 등으로 탈퇴했고, 약 773만 명의 조합원이 급여혜택을 받아 242억 원의 급여비를 지출했다. 발족 당시의 조합원 수는 1만 4,903명에 불과했으나 해산되기 전해인 1988년에는 23만 4,366명이었으며, 국고지원을 포함한 총 보험료 수입은 1988년에 약 7,800만 원에 달했고 지출액도 약 7,500만 원에 달했다. 보험료는 1988년의 경우 1세대당 1명인 경우 4,600원, 1세대당 2명인 경우 각각 3,000원으로 보험료를 정액제로 징수했고,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 장제비 · 분만비 등을 지급했으며 연간 1회씩 무료건강진단을 실시했다. 요양기관은 조합과 지정계약을 맺은 병원 · 의원을 이용하는 계약제를 실시했다.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은 1977년 한국에 강제의료보험이 도입되기 전부터 민간인 중심으로 의료보험사업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특히 자영자의료보험사업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자취를 남긴 조합으로서 1989년부터 실시된 도시지역의료보험의 모형을 설정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은 1989년 7월부터 도시지역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1989년 6월 30일자로 해산되었다.(브리태니커)

1970년대 초 구판장 형태로 운영되던 소비자협동조합은 1980년대로 들어서면서 '생활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확산되었고 1999년 소비자생활협

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여러 협동조합들이 비로소 제도적 인정을 받게 되었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협동조합은 8개의 개별법에 의해서만 설립운영할 수 있었다. 8개의 개별법은 농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다. 이 8가지 협동조합 개별법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곳만 협동조합이 될 수 있었다.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업종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단 금융과 보험 관련한 업종을 제외된다.

※ 이 자료는 2013년 경기광역자활센터와 사회투자지원재단이 공동제작한 『변화를 위한 협동 자활현장에서 배우는 협동조합』에서 많은 부분 인용하였습니다.

4. 협동조합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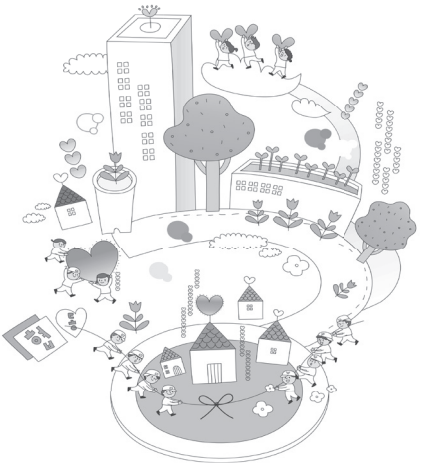

① 국제협동조합연맹 :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② 미국농무부 :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③ 협동조합 기본법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 생산 · 판매 · 제공 등을 협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5. 협동조합의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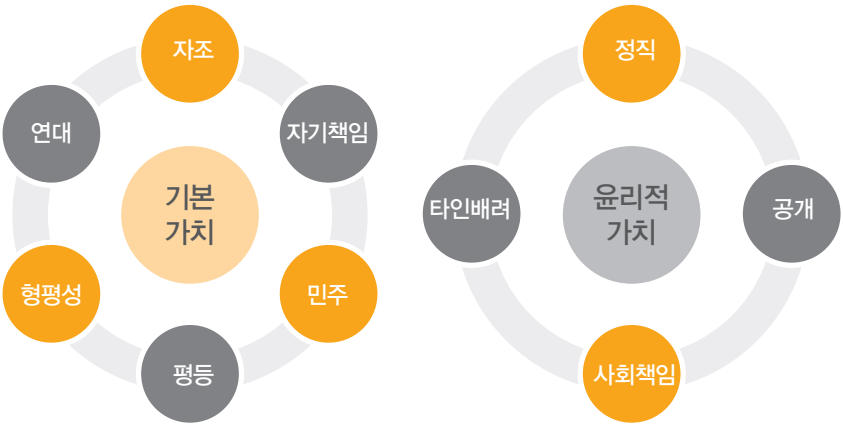

6. 협동조합의 7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 · 사회적 · 인종적 · 정치적 · 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 · 운영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 잉여금은 (1)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2)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3) 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 •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
자율과 독립	•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함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협동조합 간의 협동	•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7.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차이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주식회사 (상법)
목 적	△자주 · 자립 · 자치적 협동조합 활동 촉진 △상생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	△상행위에 관한 규정 (회사)
정의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사회적)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 등과 관련된 사업 추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설립목적 운영원칙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및 상호부조 △자발적 결성, 공동의 소유, 민주적 운영 △투기목적의 행위 금지 △소수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사업 금지 △다른 협동조합등과 상호협력, 공동사업 ♣ 사회적협동조합: 공익사업 40%이상	△영리 목적
공직선거	△특정정당 지지 금지	△없음 (정치자금법 등에 적용)
의결권 및 선거권	△출자좌수와 관계없이 1인 1표	△1주 1표(주식회사)
제명	△일정기간동안 협동조합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원 제명 가능	△없음
사업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 △사회적협동조합 소액대출과 상호부조	△22개 행위로 구분 (상법제46조)

운영의 공개	△경영공시자료 게재(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개(주식회사)
적립금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 법정적립금으로 적립 ♣ 사회적협동조합: 30/100이상 적립	△없음
배 당	△이용배당 총 배당액의 50%이상 △출자배당 총 출자금의 10%이내 ♣ 사회적협동조합: 배당금지	△주총 결정사항
잔여재산 처리	△정관에 따라 처리 ♣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 또는 국고	△청산규정에 따라 청산 △없음 (비영리법인 해당, 민법)
자금조달 금융사업	♣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출자금 한도내)	△다양한 금융사업 (단 금융업법 적용)
출자방식	△조합원의 출자 이외의 수단 없음	△채권, 유상증자 등

8. 협동조합의 유형

협동조합은 6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생산자협동조합 포함),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다.

여섯가지의 유형중 적합한 유형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한다. 협동조합은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조합원들의 이해와 욕구가 무엇인지, 주요사업은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유형 선택을 위해서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서로의 생각과 이해를 맞추기 위해 장시간 노력해야 한다.

적합한 협동조합의 유형을 판단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하고 서로 논의해야 한다.

첫 번째는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세 번째는 협동조합이 하려는 주된 사업은 무엇인가?

이 세가지의 질문과 논의를 통해 적합한 유형을 판단할 수 있다.

구분	협동조합의 목적	조합원의 필요	주된 사업	협동조합 유형
일반 협동 조합	조합원의 필요 충족	생활과 소비	구매 대행 서비스나 자산 공유 및 이용	소비자협동조합
		사업과 경영	일자리 제공	직원(노동자)협동조합
			공동업무 대행	사업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상호제공과 상호이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 협동 조합	사회적목적의 실현	사회적 목적의 실현		사회적협동조합
		보건의료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9. 협동조합 설립 절차

① 발기인 구성
(5인 이상)

↓

② 정관 작성
(목적, 명칭, 사업 등 포함)

↓

③ 설립동의자 모집

↓

④ 창립총회 의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 2/3 찬성)

↓

⑤ 설립 신고(일반협동조합, 시도지사, 처리기한 30일)
⑤ 인가 신청(사회적협동조합, 중앙부처, 처리기한 60일)

↓

⑥ 사무 인수 인계
(발기인 → 이사장)

↓

⑦ 출자금 납입
(이사장 명의의 출자금 통장에 출자금 납부)

↓

⑧ 설립 등기
(일반협동조합은 출자금 납부가 완료되면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 등기)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된 후 21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 등기)

↓

⑨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 ①~⑤번까지는 발기인(대표)이 담당
※ ⑦~⑧번은 이사장이 담당, 이후 법인명의
※ 사업개시 후 21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서울시 일반협동조합 신고업무 자치구 위임('13.8.1)으로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설립신고

Cooperative

02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현황

협동조합 상담 현황

2013. 12 기준

1.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운영개시 : 2012. 11. 1

사업내용

▸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상시 상담, 기초교육 및 컨설팅 등

대표전화 : 1544-5077

▸ 4개 권역별 운영

서북권(한살림서울생협), 동북권(사회투자지원재단), 서남권(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동남권(한국협동조합연구소)

※ 2014년 2월부터 협동조합 지원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여1개 센터로 통합 운영

2. 상담통계

상담건수 총 14,648건(일평균 5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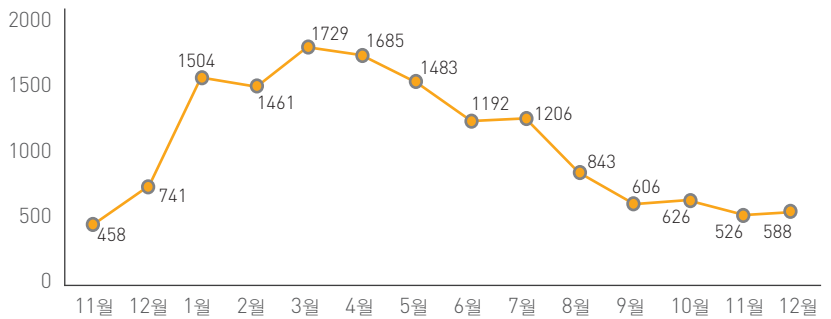

성별 · 연령별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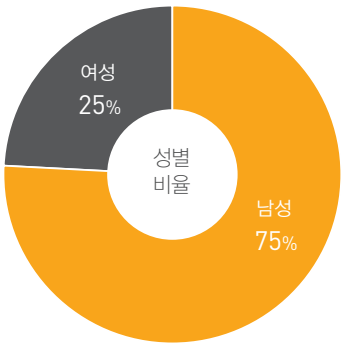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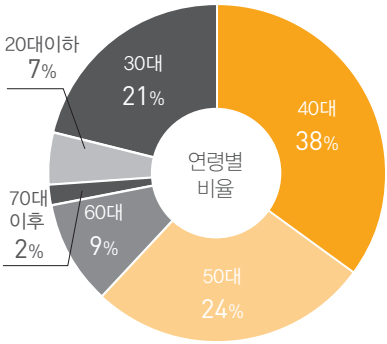

지역별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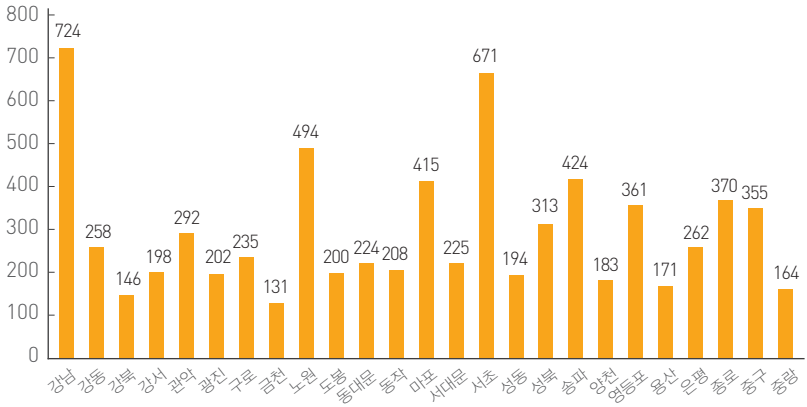

Cooperative

03

서울시 협동조합 설립 현황

협동조합 설립 현황

2013. 12 기준

전국 협동조합 현황

계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3,336 (1,014)	3,210 (967)	111 (40)	14 (6)	1 (1)

* ( )는 서울시 소재

자치구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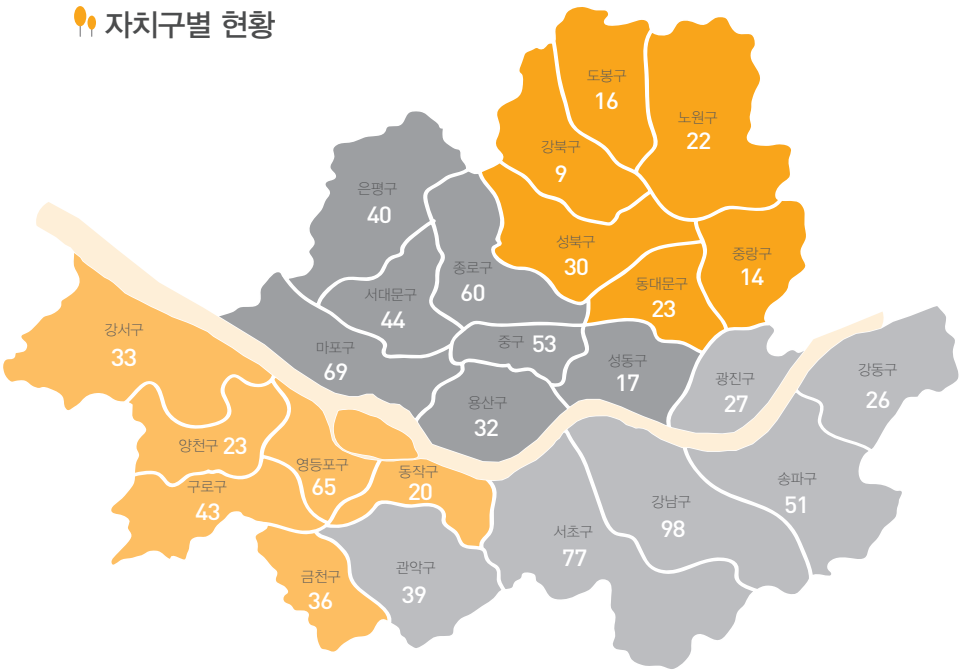

출자액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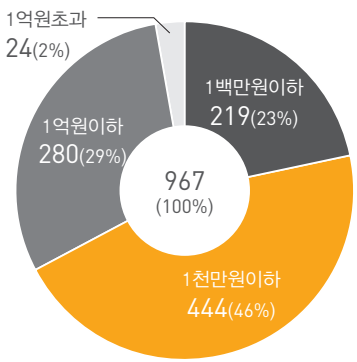

조합원수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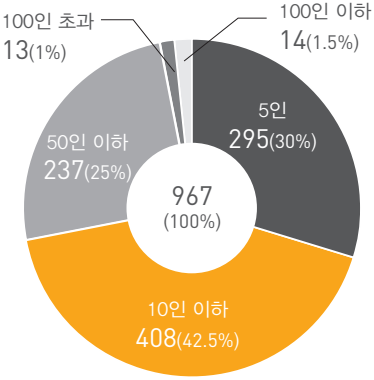

유형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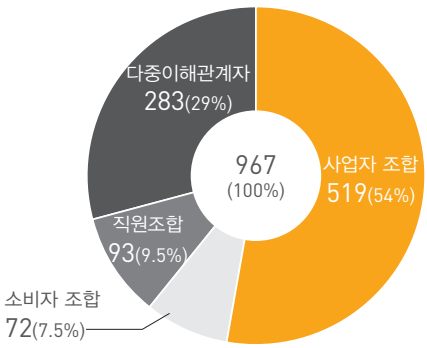

업종별 현황

도매 및 소매업	교육 서비스	출판, 영상, 정보 서비스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	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	건설업	협회 및 단체, 개인 서비스	농업, 어업 및 임업	숙박, 음식점	하수, 친환경	기타
256	159	78	75	65	50	48	33	31	31	30	27	22	62

Cooperative

04

협동조합 상담 사례

협동조합 설립 준비

명 칭

001 물품공동구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소비자협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명칭에 생활협동조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생활협동조합이나 생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3조(명칭)

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조(명칭)

① 조합 · 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는 그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 또는 "생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등이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이나 "생협"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002 해피 협동조합을 이름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해피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해피 협동조합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되고 주식회사는 상법에 의해 설립됩니다. 협동조합과 주식회사는 서로 다른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므로 사용가능합니다.

+Tip 협동조합 명칭

– 명칭 중복 확인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중앙의 열람에 "법인" 클릭 → 상호로 찾기에 "전체등기소"선택 → 법인구분에 "전체법인"으로 검색 → 상호입력 후 동일명칭의 법인이 있는지 확인

– 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가 반드시 포함

*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명칭 맨 뒤 뿐만 아니라 맨 앞에도 사용 가능(000협동조합 및 협동조합000 둘 다 가능)

*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내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시 · 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명칭 사용 가능(상법 23조)

– 기존 8개 개별법상에서 고유하게 사용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농업협동조합(농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지역+사업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신협), 새마을금고

003 ABC 협동조합이라는 영문명칭 사용이 가능한가요?

영문명칭(ABC협동조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용할 수는 있으나, 등기시에는 반드시 한글(에이비씨 협동조합)로 표기해야 합니다. 영문명칭을 병기할 경우에는 정관에 병기한 명칭으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ex) 에이비씨협동조합(ABC협동조합)

상업등기의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기에 관한 예규 제2조(정의)

① "로마자 등의 병기"는 상호나 외국인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등기한 후 로마자 등 표기를 괄호안에 함께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004 경기도에서 우리나라 협동조합을 운영하다가 서울로 이전하려는데 서울에 이미 우리나라 협동조합이라는 동일 명칭의 협동조합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전할 수 있는 건가요?

➪ 서울시 내에서 동일한 법으로 같은 상호의 법인은 설립할 수 없고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협동조합이 있으면 이전등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하려면 협동조합의 명칭을 변경해야 합니다. 단 지점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005 총회 공고할 때와 조합의 명칭이 총회 이후 바뀌어도 되는지요?

➪ 공고 시의 명칭과 다른 협동조합의 명칭이 총회에서 승인될 수 있습니다. 총회에 참여한 설립동의자(조합원)의 결정에 따라 협동조합의 명칭을 새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 ·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 · 분할 ·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Tip

조합원 총회

조합원 총회는 협동조합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명칭을 포함한 협동조합의 모든 사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창립총회의 모든 안건은 모든 설립동의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창립총회가 아닌 총회의 안건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단 정관의 변경, 조합의 합병 · 분할 · 해산, 조합원의 제명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대의원총회에서는 협동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창립총회	총회	대의원총회
구성		이사장 + 설립동의자	이사장 + 조합원	이사장 + 대의원
의결권		1인 1표	1인1표	1대의원 1표
의결권 위임		불가	가능	불가
의사결정		전체 설립동의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인원 2/3 이상의 찬성	총조합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인원 과반수의 찬성	대의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대의원 과반수의 찬성
의사 결정 사항	과반 참여 2/3 찬성	정관제정 임원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주사무소 설치	정관 변경 조합원 제명 합병, 분할 및 해산	정관 변경 조합원 제명 (단, 합병, 분할 및 해산은 의결할 수 없음)
	과반 참여 과반 찬성	–	임원선출, 해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임원선출 및 해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006 조합원으로 어떤 사람들이 가입하게 되나요?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생활 속에 나타나는 필요, 욕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합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목적, 사업, 활동 등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입한 사람들은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필요와 욕구 등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협동조합이 정체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또한 조합원은 단순한 투자자 또는 출자자만이 아니라 가입한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협동조합의 정의

1. 국제협동조합연맹 :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enterprise)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조직(association)이다.
2. 미국농무부 :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3. 협동조합 기본법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 생산 · 판매 · 제공 등을 협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 Tip 협동조합의 목적

주식회사의 목적이 투자자인 주주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면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필요 충족(생활 속의 필요, 욕구, 문제 등의 해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협동조합 조합원의 자격〉

자연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지역신협	사단법인	학교법인	외국인	지자체	자활사업(비법인)
○	○	○	○	○	○	○	×	×

007 법인이 조합원인 경우 설립동의자 명부의 주민등록번호란에 법인등록번호를 써야 하나요, 법인대표의 주민번호를 써야 하나요? 그리고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나요?

➪ 법인 조합원의 경우 설립동의자 명부의 주민등록 번호란에는 법인번호를 써야 합니다.

008 정관이나 규약에 명시하여 조합원 가입을 제한할 수 있나요?

➪ 가입과 탈퇴는 자유이지만, 정관에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 범위를 정할 수는 있습니다. 정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1조(가입)

①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Tip 조합원의 자격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협동조합의 경우 농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조합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삽입할 수 있고, 구두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는 직원협동조합의 유형일 경우 구두를 만드는 기술이 있는 사람을 조합원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을 정관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009 직원과 후원자, 자원봉사자로 구성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유형별 조합원의 가입자격을 정할 수 있을까요?

➪ 기본적인 조합원 자격은 정관에 넣어야 합니다. 자격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면 기본사항은 정관에 넣고 세부사항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 제9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5.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010 설립동의자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조합원과는 다른 사람인가요?

▷ 발기인은 협동조합을 구상하고 정관 및 사업계획안을 작성하며, 협동조합의 설립에 동의하는 자를 모집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사람이며 설립신고까지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설립동의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창립총회 개최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하고, 정관 및 사업계획안 작성에 함께 하며 창립총회에 참여하여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협동조합이 설립된 후 발기인과 설립동의자가 출자금을 납입하게 되면 조합원이 됩니다.

+Tip 발기인과 설립동의자

발기인도 넓은 의미로 설립동의자에 해당하며 설립동의자 명부 작성 시 발기인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011 미성년자도 조합원이 되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나요? 정관에서 정하면 또는 금지하지 않으면 가능한 건가요?

미성년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임원으로 선출될 수도 있습니다. 단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 Tip 미성년자 조합원과 임원

미성년자가 임원이 되는 협동조합의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합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임원으로 입후보 시(선출 시)에는 법적인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법적대리인의 동의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012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소비자협동조합에 가입하여 공동구매 등 소비행위를 하거나 사회적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자원봉사나 후원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원협동조합이나 사업자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영리사업에 종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 직원협동조합이나 사업자협동조합이 아니더라도, 협동조합의 사업이 정부나 지자체의 위탁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관계된 공무원은 참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

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 지배인 ·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제26조(겸직 허가)와 동일한 내용

013 사업자협동조합을 준비 중인데, 공기업도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요?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출자를 위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출자를 위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014 외국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임원도 될 수 있나요? 임원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국인도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으면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임원으로 선출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있다면 국내에서 인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없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나 국내거소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임원등기 시 이사장은 주소증명서면(주소공증서면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등)이 필요하고 이사의 경우 여권사본으로도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아름다운협동조합만들기 162쪽

외국인도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외국법인도 내외국인 평등주의에 따라 조합원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외국인 출자규제 관련 법률(예: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발기인 및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015 조합원 중에 가족도 같이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가족이라 하더라도 조합원은 개별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협동조합의 경우는 가족의 이용을 보통 가족의 대표로 가입한 조합원의 이용으로 보기 때문에 가족이 별도로 조합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사업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협동조합이나 직원협동조합의 경우는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가족이 협동조합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9조(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9.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016 동호회의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나요?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자연인 개인과 법인 두 가지입니다. 동호회는 임의단체이므로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Tip 협동조합 조합원

협동조합기본법의 조합원 자격에서 "자"라 함은 자연인 개인과 법인을 말합니다.

017 신용불량자의 조합원 가입, 임원 선출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임원으로 선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는 있지만 임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3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018 조합원 자격에 법인도 가능하다던데, 예를 들어 사단법인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그 사단법인의 회원도 협동조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법인도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그 법인의 구성원이 저절로 조합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동조합의 사업 이용은 조합원만 가능하므로 조합원으로 가입한 법인의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저절로 혜택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에 속해 있더라도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려면 가입해야 합니다.

+ Tip

법인 조합원

예를 들면 가나다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 에이비시협동조합법인이 가입한 경우 서로 협약을 맺어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직원이 개인의 자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직원 개인의 자격으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면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019 조합원 중에 금융사업을 하는 법인이 참여할 수 있는지요?

➪ 협동조합이 금융이나 보험과 관련한 사업은 할 수 없지만 금융이나 보험에 관련한 사업을 하는 법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45조(사업)

③ 협동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협동조합 참 쉽다, (160쪽)

협동조합이 기존의 취지와 달리 금융 및 보험 관련 사업이 무분별하게 시행될 경우 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조합원과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소액 형태의 협동조합이 다수 설립되어 자율적인 금융 사업을 하는 경우, 최소한의 금융 감독조차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Tip

금융 및 보험 관련업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으나,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2014년 7월 22일부터는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들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임 원

020 협동조합은 법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법인 조합원이 임원도 할 수 있나요?

⇨ 법인은 조합원이 될 수도 있고, 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 시 법인의 이름으로 등기하되, 법인을 대표해서 임원의 역할을 수행할 사람을 협동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34조(임원)

④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61조(설립등기)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4. 임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021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맡은 경우, 타 협동조합의 임원을 겸직할 수 있나요?

⇨ 하나의 협동조합에서 이사장을 맡은 경우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겸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나 감사 또는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일반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하나의 협동조합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사업의 성격과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022 사단법인 임원이 협동조합 이사장 겸직이 가능하나요?

사단법인과 협동조합은 별도의 법인체계이므로 겸직의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라면 임원이나 이사장으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습니다.

023 협동조합의 임원이 직원으로 상근할 수 있나요?

임원의 직원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직원(노동자)협동조합의 경우 임원이 직원을 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임원이 직원을 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임원 총수의 1/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을 겸할 수 있습니다. 이외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임직원 겸직 금지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직원협동조합의 유형에서 이사와 감사 모두 직원을 겸할 수 있지만 그 외의 협동조합은 감사가 직원을 겸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이사와 직원은 협동조합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감사는 협동조합의 전체 업무에 대해 감사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8조(협동조합등 임직원의 겸직)

협동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동조합등의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협동조합등의 규모 · 자산 · 사업 등을 고려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13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의 겸직)

①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 수가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024 이사가 상근하면 직원인가요 아닌가요?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 이사가 상근하더라도 직원이 아니고 상근임원입니다. 상근임원에게는 상근활동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근하는 임원은 직원의 역할이 아닌 임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또한 협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원보수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협동조합 표준정관 제49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025 일반 회사원의 경우 협동조합 직원으로 활동이 가능하나요?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이중취업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기에 두 곳의 회사에서 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의 사규에 다른 회사의 임원 금지조항이나 이중취업 금지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회사의 임

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회사의 내규에 정해져 있으면(예, 다른 회사의 임원이 되려면 기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내규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026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임원으로 선출 가능한가요?

협동조합기본법에는 임원을 총회에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사의 정수 및 이사 · 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준정관에는 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사는 1/5 이내로, 감사는 1/2 이내로 외부에서 선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법에서는 내부와 외부에서 모두 선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표준정관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일정비율로 외부인사도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 정관에서 정하는 대로 선출할 수 있는데 정관에 상세한 내용을 적지 않는다면 외부인사로 임원진을 구성할 수 있으며, 조합원 중에서만 선출할 수 있게 정관을 승인하면 조합원 중에서만 선출해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34조(임원)

①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 · 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협동조합 표준정관 제44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Tip 임원의 선출

정관에 임원선출에 대해 조합원이나 외부인사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임원 전체를 다 외부인사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면 협동조합의 자발적 참여, 자립과 독립적 운영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의 자립과 독립, 조합원들에 의한 민주적 운영을 실현하려면 조합원 중심의 운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사무소

027 사무실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나요?

반드시 전용사무실을 확보할 필요는 없으나 주사무소로 등록할 공간은 확보해야 합니다. 차후 사업자등록할 때에는 사용 사실에 대한 증빙(소유지 혹은 임대차계약)이 필요하므로 임대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Tip 협동조합의 주사무소

협동조합을 설립 시 가정집을 주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따라 사무실이나 사업(활동)공간 등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조업, 인쇄업 등의 경우 사무실 등의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무서에 따라 법인은 반드시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곳이 있는데 이럴 경우 가정집이 아닌 전용사무실 등을 확보해야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협동조합 법인의 재산이 아닌 사무실에 대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일 경우 임대 계약서
2. 임대한 곳을 임대한 경우 건물주의 확인이 들어간 전대차계약서
3.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상임대확인서(무상사용동의서등)

028 협동조합 정관에 주소를 모두 기입해야 하나요? 출자금 총액도 꼭 넣어야 하나요?

서울에서는 세부 주소를 최소한 자치구명까지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자금 총액을 일반협동조합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12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

029 정관에 임원의 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나요? 이사회 의결사항에 임원 보선권을 넣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등기하지 않은 임원이 가능하나요?

임원의 수는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정확한 정수를 기재하지 않고 일정 범위로 정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정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몇 명의 임원을 선출할지는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임원선거공고를 통해 알립니다.
선출된 임원중에 결원이 발생하면 이사회에서 임원 보선을 할 수는 없고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선출해야 합니다(총회 때까지는 결원 상태).

협동조합기본법 제34조(임원)
①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 · 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Tip

비등기이사란?

비등기이사란 등기하지 않는 이사를 말합니다. 비등기이사는 법적인 권한이나 책임이 없습니다. 이사회의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의 이해와 욕구를 반영하는 내부 운영을 위해 비등기이사를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협동조합이 청소년 비등기이사를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030 생태보전시민모임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태교육센터를 직원과 후원자, 자원봉사자로 구성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각 유형별 조합원의 가입자격이 조금씩 다른데 그 내용을 규약으로 넣어도 되는지요? 조합원 지분양도를 금지하고 싶은데 정관에서 빼도 되나요?

기본적인 조합원 자격은 정관에 넣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면 기본적인 사항은 정관에 넣고 세부적인 것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지분양도에 대한 조항은 기본적으로 지분양도를 제한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인데, 양도를 하려면 총회 결의를 받도록 되어있고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것은 신규 가입의 절차를 밟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관에서 빼는 것 보다는 해당 내용은 넣고 필요한 내용을 첨가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양도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4조(탈퇴)

③ 조합원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협동조합 표준정관 제19조(지분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031 표준정관의 내용을 임의대로 변경가능합니까?

정관에 규정된 내용은 기본법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법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임의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본법보다 더 강한 내용의 규정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법에는 법정적립을 잉여금의 10%이상 하게 되어 있지만 정관에 잉여금의 20%이상 적립하도록 강화하는 규정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정관)

①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 ·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 ·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032 정관에 나열한 사업의 종류를 사업계획서에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다 기술해야 하나요?

정관에 설립목적과 일치하고 현실 가능한 사업을 기재해야 하며 사업계획서에는 정관에 규정된 모든 사업의 종류에 대한 세부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가 일관되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Tip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서류 작성 시 사업계획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는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두 번째 부분에는 정관의 사업의 내용을 기재하고 세 번째 부분에는 각 사업에 대한 사업명, 필요성, 추진내용, 추진전략, 예산, 기대효과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033 일반협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사업계획서에 소액대출 등의 사업계획을 넣어도 될까요?

➪ 소액대출과 상호부조사업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부수사업으로만 가능합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소액대출과 상호부조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사업에 따른 소액대출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15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①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소액대출 이자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한도 내에서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액대출 이자율의 최고 한도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를 고려하여 정한다.

②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의 연체이자율은 해당 대출에 적용된 이자율의 1.5배를 최고 한도로 하여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넘을 수 없다.

③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의 한도는 조합원의 수 및 출자금 규모, 소액대출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법 제94조에 따른 소액대출 사업은 법 제93조의 주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034 기본법에 일반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일반협동조합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나요?

일반협동조합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은 사회적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에는 설립동의자 수가 500명 이상이어야 하고, 모두가 5만원 이상의 출자금을 내야하는 등의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12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동의자가 5인 이상일 것. 이 경우 설립동의자는 법 제93조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설되는 의료기관 1개소(個所)당 설립동의자가 500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 1인당 최저출자금이 5만원 이상일 것. 다만,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인당 최고출자금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일 것. 다만,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총액을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자산 중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개설하려는 해당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마다 제2항 각 호의 요건(이 경우 제2항 각 호 중 "설립동의자"는 "조합원"으로 본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 및 인접 시 · 군 · 구에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35 출자금 한 구좌에 대한 규정과 조합원 개인이 낼 수 있는 최대한도의 출자좌수 규정이 있나요?

출자금 한 구좌에 대한 최저한도나 최대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1인의 최대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은 5만원 이상의 출자금을 납부해야 하고, 개인(가족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포함) 출자금은 총 출자좌수의 10%를 넘을 수 없으며 총출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영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036 표준정관에는 출자금 납입 시 2회 분할이 가능하게 되어있는데, 이를 3회로 늘려도 되나요? 예를 들어 1회 10%, 2회 40%, 3회째 50%로 해도 될까요? 납입기간도 6개월이 아니라 1년 정도로 늘리는 것도 가능한지요?

기본법에서 조합원은 1구좌 이상을 출자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표준정관에 의하면 출자금 분납은 할 수 있습니다. 분납이 조합사업의 이용과 조합활동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면 분납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납이나 분납의 비율이 조합사업의 이용과 조합활동에 문제가 없다면 조합 내부적으로 출자금 납부에 대한 방법을 결정하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정관에 의해 출자금 분납은 할 수 있으나 1회 분납 시 먼저 조합원 자격을 주는 것이므로 10%만 출자해도 자격을 주는 것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납입기한이 너

무 길어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분납을 3회 이상으로 늘리더라도 1회분은 50% 이상 하도록 하고, 납입기한도 최대 당해년도 말까지로 해서 다음년도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출자 및 책임)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협동조합 표준정관 제17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비고)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창립총회

037 총회를 하려고 합니다. 조합원은 서울과 경기도에 산재해 있습니다. 총회공고문을 반드시 신문지면에 게시해야 하나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전자우편이나 등기우편 발송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8조(총회)

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 안건 ·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협동조합 표준정관 제5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협동조합 표준정관 제30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 안건 ·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협동조합 업무지침
(공고방법) 총회 개최 전 일정기간 이상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공고 – 일간지 게재, 게시에 의한 공고, 등기우편 발송, 전자우편 발송 등 설립동의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이면 무방
(공고내용)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하는 사항 포함

+ Tip 총회의사록 공증
총회의사록 공증 시 공증사무소에서 총회 개최 공고에 대한 명확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합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한 총회공고문의 사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좀 더 명확히 하려면 등기우편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거나 전자메일 보낸편지함의 내용을 화면캡처해서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038 협동조합 설립 시 총회의사록 서명날인 방법은 무엇인지요?

▷ 창립총회 시 3인 이상의 의사록날인인을 선출하고 총회의사록에 의장(처음 임시의장과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의장이 다를 경우 두 사람 모두)과 의사록날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3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Tip

총회의사록 기명날인과 간인 방법

기명날인을 한다는 것은 마지막장에 기명하고 날인하는 것을 말하고 간인이란 총회의사록 앞장을 접어서 뒷장과 같이 찍히도록 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명날인과 간인을 같이 해야 총회의사록이 원본으로써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039 정관이나 총회의사록에 서명이나 기명날인 모두 가능하나요?

서명이나 기명날인 모두 가능합니다. 서명으로 할 경우 서명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관은 발기인만이 기명날인할 수 있고, 의사록은 총회에서 선임된 사람과 의장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그리고 정관이나 총회의사록 공증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30조(총회의 의사록)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Tip

발기인

상법의 규정을 보면 창립총회 시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를 발기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5인 이상의 발기인이 기명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협동조합의 발기인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발기인 모두 정관에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040 설립신고 등을 할 때 누구의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하나요?

설립신고인은 발기인(대표)이며 설립신고 시 발기인(대표)의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립등기신청은 이사장의 명의로 해야 하므로 이사장의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설립등기 신청할 때 법인의 인감도장을 신고해야 합니다. 설립신고, 공증, 등기, 사업자등록 등은 모두 법적인 처리사항이므로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041 설립동의자 명부에 동의자의 서명날인이 들어가야 하나요?

설립동의자 명부에 설립동의자의 서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후 총회 시에는 참석한 사람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총회 참석자 명부입니다. 창립총회 때는 설립동의자 명부와 총회 참석자 명부가 동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총회 참석자 명부에 창립총회에 참석한 설립동의자는 반드시 서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창립총회 성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Tip

설립동의자 명부

설립동의자 명부란 협동조합의 설립에 동의하고 설립동의서를 작성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한 사람들의 명부입니다. 설립동의자는 설립동의서(설립 이후는 조합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협동조합에 제출하고, 협동조합은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설립동의서에는 이름, 인적사항, 약정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042 창립총회 공고기간이 법으로는 정해져있지 않은데 얼마동안 해야 하나요? 적절한 공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창립총회 공고기간은 공고일과 개최일을 제외한 7일전 공고(협동조합기본법 제28조 제5항 준용)가 원칙입니다. 공고는 설립동의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면 가능합니다.

설립동의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주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해 개별 통보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043 창립총회를 공고했는데 장소를 갑자기 변경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1주일 기간을 두고 재공고를 해야 하나요?

일시가 바뀐 것이 아니며 설립동의자가 소수이고 직접 연락이 가능하면 새로 창립총회 공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설립동의자 모두에게 개별통지 등을 통해 바뀐 장소를 정확히 안내하고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044 창립총회 의결사항 중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협동조합의 준비와 설립 과정에 사용된 비용을 협동조합의 경비로 인정할지 등을 묻는 절차를 말합니다. 설립 비용을 모단체나 발기인회 등이 부담하기로 했다면 별도로 의결을 할 필요는 없지만, 새로 설립하는 협동조합의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Tip

창립총회 의결 사항

창립총회에서 의결해야할 기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1. 정관 및 규약 승인
2. 임원선출
3.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4.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5. 주사무소의 소재지 승인
   (공증사무소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6. 기타

045 창립할 때 현물출자를 할 수 있나요? 감정평가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창립총회에서 현물출자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된 정관과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을 승인받으면 그에 따라 현물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를 할 때에 현물출자가 있으면 현물출자재산인계서 또는 출자재산영수증(조합 명의로 발급 가능)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경우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출자 및 책임)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046 창립총회에서 초대임원을 선출할 때 선거관리규약이 없어도 되나요?

➪ 규약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창립 시에는 별도의 규약 없이 총회 참석자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리 발기인회에서 정관안 외에 선거관리규약안도 함께 준비하여 총회에서 의결을 얻으면 그에 따라 초대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대임원선거관리규약을 따로 총회에서 승인받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① 협동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047 창립총회에서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설립동의자(발기인 포함)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설립신고 등)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048 총회의사록 공증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설립등기하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창립총회의사록을 공증 받거나 변호사가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공증받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설립신고 시에는 의사록 공증을 안 받아도 가능하지만 설립등기 시에는 반드시 총회의 사록을 공증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창립총회 개최 준비 단계부터 의사록 공증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Tip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시 유의할 점

▶ 공증시 준비 서류

1. 창립총회의사록 원본 2부
2. 이사장의 진술서
3. 정관(복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을 적고 이사장 인감 날인)
4. 조합원의 명부
5. 조합원의 인증 관련 위임장
6. 조합원의 인감증명

▶ 공증의 방법

1. 변호사가 총회에 참여하여 공증하는 방법
2.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하는 방법

▶ 공증사무소마다 첨부서류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증사무소에 반드시 확인 후 진행

049 협동조합에서 여행사업을 할 수 있나요? 어떤 조건이 필요하나요?

협동조합의 사업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나(보험업과 금융업 제외)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업종이면 관련 법규에 따라 그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행업은 종류에 따라 등록기준도 서로 다릅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의 관광사업 등록기준을 보면, 일반여행업의 경우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이 2억 이상이어야 하고, 국외여행업의 경우 6천만원 이상, 국내여행업은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통적으로 사무실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관청에 등록을 할 경우 신청해야 할 관할 등록관청은 일반여행업의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고, 국외 · 국내여행업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 Tip

여행업

국외여행업은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아웃바운드)에 한정하며, 비자를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국내여행업은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인트라바운드)을 말하며 일반여행업은 비자를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해 내국인 국내여행(인트라바운드), 내국인 해외여행(아웃바운드), 외국인 국내여행(인바운드)을 대상으로 하는 형태의 여행업을 말합니다. 이 중 일반여행업은 모든 여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종합여행사를 일컫는 것입니다.

Q50 안경 관련 사업자들이 공동판매를 위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신고서류에 업종과 업태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해 업종과 업태를 구분하거나 세무서에 문의해서 확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업종을 위한 인허가요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안경소매업은 안경사면허증이 필요하며 지역보건소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려면 5평 이상의 청결한 공간과 필요한 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Q51 협약사들이 사업자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의약품 공동구매사업(의약품 도매업)을 하고자 하는데, 약사법에서는 의약품 도매업자가 특정 약국에만 공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외 이용금지 조항과 충돌되고 있으면(협동조합 기본법과 약사법의 충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협동조합에서도 특정 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의료분야의 특수성이 있어서 약사법에 해당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관부처에서 약사법 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몇 군데 약국이나 협동조합 차원이 아니라 약사협회 등 기존의 단체가 법 개정을 건의하도록 해야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① 영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 약국등의 개설자, 그 밖에 법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 및 약국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특정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에만 의약품을 공급하여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을 조장하거나 환자의 조제 · 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

나. 매점매석 또는 판매량 조정의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환자의 조제 · 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

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결제대금에 대한 담보 부족, 계약조건의 위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의약품 도매상, 약국등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

라. 거래 상대방에게 특정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특정한 의약품의 수입자, 특정한 의약품 도매상, 특정한 약국등의 개설자 및 특정한 의료기관과의 의약품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Q52 갈수록 줄어드는 농지를 보전하는데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취지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농지를 구입하고 직접 또는 귀농희망자 등에게 임대하여 영농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현행 농지법에 의하면 농민이나 농업법인 등이 영농을 위해서만 농지를 구입할 수 있어 협동조합 자체로는 농지 구입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농업회사법인의 유형에 협동조합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관련법(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협동조합형 농업회사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구입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도시 소비자로만 구성할 수는 없고 농업인이 1/2 이상 참여해야 할 것이고 선의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 외에 다른 방안이 있는지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 · 구 · 읍 · 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053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에서 법률서비스나 컨설팅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법 등에서 법률서비스 제공 자격자를 정하고 있고 그 자격을 만족해야 합니다. 현재 변호사 법에 따라 법조인이 아닌 자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알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일반인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법 제21조(법률사무소)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에 두어야 한다.

③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무공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나의 사무소로 본다.

변호사법 제40조(법무법인의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 ·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변호사법 제41조(설립 절차)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054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공동주택을 짓고 있는데, 협동조합을 설립해 조합원에게 임대하고 공동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협동조합에는 취득세 감면 등의 조치가 있나요?

주택협동조합의 취등록세 부분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협동조합이 토지 매입과 주택 건축을 하면서 취등록세를 납부한 후에 다시 조합원이 분양을 받을 때 또 한 번 취등록세를 내야 하므로 같은 건으로 두 번 과세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또한 법인이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인구과밀지역에는 3배 중과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분야도 협동조합에서는 중요한 영역인데 이

러한 세율은 주택협동조합을 거의 불가능하게 할 정도라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취등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도록 관련 법(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Q55 협동조합으로 경비업도 할 수 있나요? 이후에 연합회도 설립하려고 하는데 개인도 가입이 가능하나요?

경비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인이어야 하며, 자본금 1억 이상이고 그 외 필요한 요건 갖추어 지방경찰청에 허가 신청). 연합회는 등기된 협동조합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개인이 연합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경비업법 제4조(경비업의 허가)

①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의 보유
2. 다음 각 목의 경비인력 요건

가. 시설경비업무: 경비원 2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

나. 시설경비업무 외의 경비업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인력

3. 제2호의 경비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의 보유
4. 그 밖에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2.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 · 임원을 변경한 때

3.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 · 이전 또는 폐지한 때
4.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 · 이전 또는 폐지한 때
5.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 절차, 신고의 기한 등 허가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056 응급환자 이송업(사설응급차)을 하는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원협동조합 형태로 만들기로는 했는데, 당장 사업을 위한 인가요건을 갖추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일단 법인만 설립하고 사업은 나중에 해도 되나요?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최소출자금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정사업을 위해 요건이 필요하면 이를 충족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응급환자 이송업은 예치금 2억과 특수차량 5대 등이 필요). 특수차량을 직원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면 법인 명의로 현물출자도 가능하나 객관적으로 가액을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하고(세무사 도움이 필요할 것) 일단 법인만 설립하는 것은 사업자등록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법인 설립 이후 요건을 갖추어 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①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 · 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 · 도별로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이송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 · 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송업자가 제3항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이송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057 시각장애인인 안마사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안마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의료법에서 안마원은 법인이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혼자 투자하여 안마원을 운영하는 것은 운영 부담이 커서 협동조합 방식이 좋다고 생각되어 그동안 협동조합 교육도 받았는데 법의 제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안마사협회는 법인도 가능하게 하는 것에 반대의견도 있어 통일된 입장을 갖지 못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먼저 당사자들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행 제도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마원과 관련된 의료법이 개정되어야 협동조합에서 안마원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협회 내부에서 합의가 되도록 노력하고, 주변에 도움 줄 분들을 활용해서 여론을 조성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058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각종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사항은 관할세무서(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상담번호 126번으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p+

주요 인허가 업종 예시

민원사무명	근거법규	소관부처	비고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보건소 보건위생과	신고
건설기계매매업	건설기계관리법	구청 건설관리과	등록
건축사	건축사법	구청 건설관리과	등록
경비업	경비업법 제4조	지방경찰청	허가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구청 지적과	등록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 제4조	구청 문화체육과	등록

+ Tip

교습소	학원의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신고
노래연습장업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구청 문화체육과	등록
담배수입판매업	담배사업법 제13조	구청 지역경제과	등록
독서실	학원의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등록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법 제17조 제3항	구청 지역경제과	신고
목욕탕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보건소 보건위생과	신고
미용업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보건소 보건위생과	신고
비디오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청 문화체육과	등록
산후조리원	모자보건법	보건소 보건지도과	신고
안경업소 개설	의료기사법 제12조의 3항	보건소 의약과	등록
이용업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보건소 보건위생과	신고
인쇄소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구청 문화체육과	등록
일반여행업	관광진흥법 제4조	구청 문화체육과	등록
학원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등록

059 사업자등록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060 외국인회사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회사 측에서는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점 때문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만들어 회사 측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협동조합에서 계약을 하는 형태는 일반적인 파견근무나 아웃소싱이 아닌 도급 형태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파견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협동조합의 이름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협상을 위해서만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발전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을 만들어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를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 · 국민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 기술 ·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 사용사업주 ·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수리위탁 ·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 수리위탁 ·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 · 수리 · 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 · 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유 형

사업자 협동조합

061 사업자협동조합에서 이용에 따른 배당은 어떤 의미인가요? 초기에 고생한 조합원에게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신규로 가입하는 조합원에게 일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규정을 정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기존 조합원이 위치한 사업장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있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가능하나요?

이용에 따른 배당은 잉여 발생의 공헌도에 따라 배당한다는 것입니다. 공동판매사업을 하는 사업자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통해 판매한 금액(협동조합 입장에서는 매입액)을 기준으로 배당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나중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가입 및 이용 시에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관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조합원과의 상권 갈등 등의 이유로 일정 거리를 두게 하는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라고 생각되지만 그렇게 자격을 제한해도 될지는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의 판례나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Tip

협동조합의 철학과 가치

협동조합은 평등과 형평성의 철학과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선구자들의 봉사와 헌신이 있어야 성장발전이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협동조합 초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해 금전적인 보상이나 후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규정 등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062 처음에는 사업자협동조합 형태로 설립한 후 이후에 소비자협동조합 또는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으로 바꿀 수 있나요?

➪ 일반협동조합 내에서 유형을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유형을 변경한다는 것은 정관의 내용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유형변경에 따른 정관 변경을 총회의결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유형을 바꾸려면 정관에서 조합의 목적, 조합원 자격, 임원의 구성, 사업의 종류, 사업의 이용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하기에 총회를 거쳐야 하며 개정된 정관을 구청장에게 변경신고해야 하고 정관변경 등기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1일부터는 일반협동조합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의2(법인등의 조직변경) ➪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

①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105조의2에서 같다)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 · 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와 제108조의2에서 같다) 및 법인등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 · 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 Tip 협동조합의 유형

소비자, 생산자, 직원, 사업자,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유형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협동조합의 유형을 구분하려고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063 특정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그 조합의 이사장을 해당 업종의 협회 임원이 겸직할 수 있나요? 각각의 사업자들이 해당 업종에 필요한 등록필증을 가지고 있는데 구청에서 용역을 입찰받을 때 협동조합법인 명의로 등록필증을 또 받아야 하나요?

사단법인인 협회와 협동조합은 별도의 법인 체계이므로 이사장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고 하나의 협동조합에서 이사장을 하는 사람이 다른 협동조합의 임원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사업 발주처에서 입찰자격으로 법인 명의의 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합원과 별도로 법인이 해당 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 공공사업의 경우 법인은 관련된 자격이 있거나 업종이 관련되어야만 입찰자격이 주어집니다.

064 특정한 영역의 사업체가 현재 우리나라에 5곳이 전부인데, 그 업체가 모두 모여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가격 담합이나 독과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업체가 모여 협동조합을 만들어 대형프로젝트 등 제안서를 제출할 때 조합원인 업체들의 실적이 협동조합의 실적으로 인정되나요?

협동조합기본법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원의 실적을 협동조합의 실적으로도 인정할 수 있는지는 발주업체의 자격요건이나 해석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자명이 다르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실적으로 제출할 수는 없겠으나 구성 업체를 설명하면서 해당 업체들의 실적을 추가한다면 참고자료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재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2.5〉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065 소설이나 만화 작가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인터넷연재나 출판사업 등을 할 수 있을까요?

협동조합의 자립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협동조합의 수익모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작가들의 협동조합은 사업자(또는 생산자)협동조합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설과 만화

는 창작물이므로 매입매출의 거래관계보다 수수료 방식으로 사업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출판사업 외에 다른 부대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창작교실, 문화카페 등).

직원 협동조합

066 직원협동조합에서 수익 배분은 어떻게 하나요? 이용에 따른 배당이란 무엇인가요?

직원협동조합에서는 기본적으로 급여의 형태로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며, 급여 외에 결산 후 잉여금 처분의결에 따라 배당을 할 수도 있으나 보조적인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용에 따른 배당이란 이익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따라 배당한다는 의미이며, 조합원의 이용률을 정의하는 내용을 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배당에 대한 규약). 직원협동조합의 경우 이용율은 보통 노동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내용에 따라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067 마을카페 등을 직원협동조합 형태로 설립하기로 하였으나 사업규모가 작아 직원 수가 조합원의 2/3 이상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직원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기본적으로 직원이어야 하겠지만, 근로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모두 가능). 사업규모가 작아 정규직으로 하기 어렵다면 일부는 일용직 형태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일을 같이 한다는 것이 중요). 유급직원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하며, 4대 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68 총 12명의 조합원 중 8명이 직원 조합원이고 총 직원수는 8명인 협동조합입니다. 이때 직원이 임원이 될 수 있나요?

➪ 조합원의 2/3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2/3이상이므로 직원이 임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8조(협동조합등 임직원의 겸직)

법 제44조 제3항 단서(법 제7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에 따라 협동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동조합등의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협동조합등의 규모 · 자산 · 사업 등을 고려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협동조합기본법제13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의 겸직)

① 법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44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 수가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069 식당이나 레스토랑을 협동조합으로 운영할 경우 비조합원 이용금지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직원 또는 사업자 협동조합의 유형으로 식당 등을 운영할 경우 판매하는 것은 조합원 이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판매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노동 또는 생산에 참여하는 것이 조합원 이용임).

그러나 소비자들이 모여서 소비자협동조합 유형으로 식당 등을 운영할 경우 조합원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9조(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협동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기관 · 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협동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7.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 · 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대상으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8. 협동조합(「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이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홍보기간"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總供給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협동조합이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날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9.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10.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협동조합이 전체 직원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11. 그 밖에 협동조합의 사업 성격 · 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070 스포츠 관련 사업을 하는 직원협동조합을 준비중입니다. 사업아이템이 다양한데 하나의 법인에서 모두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로 법인을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설립 목적과 조합원 구성이 동일하면 하나의 협동조합법인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조와 도소매를 같이 할 수도 있고, 업종도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사업의 종류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업종에 필요한 인허가나 신고, 등록 등의 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

071 사업계획서에서 조합원현황의 직원과 직원현황의 직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조합원 현황에서의 직원이란 협동조합의 조합원임과 동시에 직원인 사람을 말하며 직원현황의 직원이란 협동조합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으면서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을 말합니다.

072 직원협동조합 설립 시 모두 직원이어야 하나요? 또한 직원이 모두 조합원이어야 하나요?

➪ 직원(노동자)협동조합 유형이라 함은 조합원의 2/3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2/3이상인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즉 직원(노동자)협동조합에서 직원이 아닌 조합원(설립동의자)이 1/3 이내로 가능합니다. 또한 직원(노동자)협동조합 유형에서 사업의 이용이라 함은 협동조합에 고용되어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체 직원 중 1/3 범위 내에서 비조합원을 직원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9조(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0.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협동조합이 전체 직원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8조(협동조합등임직원의겸직)

법제44조 제3항단서(법제7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에 따라 협동조합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동조합 등의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이상인 경우(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소비자 협동조합

073 협동조합에서 비조합원 이용금지 조항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도 일정한 절차가 필요한데 실무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을까요? 가입하면 조합원의 권리나 의무가 동일한데 외부의 불순세력이나 원치 않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비조합원 이용금지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 일정규모가 되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처럼 조합원 가입 절차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전산)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원치 않은 사람이라도 조합에 위해를 끼치지 않으면 가입을 제한하거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단 최소한의 조합원 자격을 정관에 명시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소수에 의해 조합 운영이 좌우되지 않도록 민주적인 절차와 훈련을 보강해가야 합니다(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운영). 비조합원 이용에 대한 규정을 어길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19조(과태료)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6조, 제81조 및 제95조(제1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원등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등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Q74 직원이 약 300명인 법인인데 회사 1층에 있는 카페를 직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협동조합으로 가능하나요? 회사법인도 조합원 될 수 있나요? 법인이 많은 금액의 출자가 가능하나요? 그리고 수익금이 생겼을 경우 수익금을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나요?

직장 내 소비자협동조합 유형으로 설립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 비조합원 이용금지에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법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으나 출자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총출자금의 30%까지만 가능합니다. 회사 직원인 조합원의 복지를 위한 지출은 조합의 목적사업으로 볼 수 있어 총회 의결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될 수도 있고, 잉여금 처분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Q75 농촌의 생산자와 도시의 소비자를 연결하는 협동조합을 희망하며,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을까요?

조합원의 구성에서 소비자가 포함되면 조합원외 이용 금지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조합원이 많아져야 할 것이며, 그 결과 실질적으로는 다수를 차지하는 소비자의 의결에 따라 운영되는 소비자협동조합의 성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조합원의 동질성을 명확히 하여 주된 조합원이 생산자인지, 직원인지, 소비자인지에 따라 적절한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Tip

생산자조합원과 소비자조합원의 협동조합

한 협동조합에 생산자조합원과 소비자조합원이 공존할 경우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매출증대를 위해 소비자조합원을 많이 가입시키려고 할 것이고 이후 생산자조합원의 수보다 소비자조합원의 수가 월등히 많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과 소비라는 관점의 차이 때문에 협동조합 운영과 사업에 대해 많은 이견들이 돌출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생산자협동조합과 소비자협동조합을 만들어 서로 협력과 상생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076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경우 이해관계자별로 대의원수를 적정한 비율로 정해서 선출해도 1인 1표 원칙에 문제가 없을까요?

정관이나 규약에 대의원 선출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몬드라곤 에로스키에서는 직원대의원 50%, 소비자대의원 50%로 대의원총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정관례 제24조 제2항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9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 대의원은 조합원 유형에 따라 2 이상의 유형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077 물품을 생산하는 조합원, 생산한 물품을 공동구매하여 판매하는 조합원, 그리고 직원조합원으로 구성한다면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조합원은 소비자 조합원인가요 아니면 사업자 조합원인가요?

생산한 물품을 최종 소비하는 사람을 소비자라고 한다

면 생산한 물품을 공동구매하여 판매하는 조합원은 사업자 조합원입니다. 즉 최종 구매하여 사용하는 자가 아니고 판매하기 위한 구매이므로 사업자 조합원으로 봐야 합니다.

Q78 농민생산자와 소비자들이 모여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합니다. 소비자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생산물을 판매해도 되나요?

A 소비자조합원이 포함되어 있는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경우 비조합원에게 생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시 법46조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조합원을 포함하지 않는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경우는 비조합원에게 생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Q79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권한은 소관업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인가 신청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60일 이내에 1회 연장 가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설립인가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인가여부 검토는 한국사회적경제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협동조합만들기 105쪽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여부 세부 절차

① 설립인가 신청서 검토의견 요청
(관계 중앙행정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접수 후 1주일 이내)

↓

② 현장실사 등을 통한 요건 검토
(진흥원, 민간지원기관)

③ 검토보고서 작성 송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관계중앙행정기관)

(15일 이내 회신)

④ 인가 여부 검토 및 결정
(관계 중앙행정기관)

⑤「설립인가」결정 통보
(관계 중앙행정기관 → 기획재정부)

⑥ 설립인가 결정 통보
(설립인가증 교부)

(접수 후 1주일 이내)

Q80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신청 접수처는 어디인가요? 정확히 어느 부처에 해당되는 사업일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권한은 소관 업무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접수처는 각 소관부처이고, 신청하는 조합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이 다수의 부처와 관련되어 있으면 주사업의 소관 부처에 신청하며,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인가신청 부처를 잘 모를 때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나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상담기관과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신청하면 소관부처는 사회적기업진흥원에 업무위탁을 하여 신청 조합을 현장실사하도록 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름다운 협동조합만들기 99쪽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는 정부조직법, 직제 및 관계법령 등에 따르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081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부과금 면제 조항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과금이란 무엇인가요?

➪ 부과금과 관련이 많은 업종에는 큰 혜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과금의 예로는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집단에너지공급사업 건설비용 부담금(주택), 수질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물이용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개발부담금, 혼잡통행료, 재건축부담금 등이 있습니다(기획재정부의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참조).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부담금 부과의 원칙)

①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부과권자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부담금 납부의무자
2. 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
3. 부담금의 감면 요건 및 방법
4. 부담금의 용도
5. 제2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6.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7. 의견제출 기한
8.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

③ 부과권자는 제2항제5호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福利)를 위하여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법령에서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해당 법령에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한 등이 정하여져 있고, 제

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만, 납부의무자에게 최초로 부과하는 경우와 부과요율 인상, 부과대상 변경 등 부담금의 부과요건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부담금의 부과, 감면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082 사회적협동조합 등기 시 총회의사록 공증 면제는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은 후 '총회의사록 공증면제 추천 신청서'를 소관부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관부처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인가증을 발급하면서 법무부(법무과)에 총회의사록 공증면제 추천 서류를 보낼 수 있습니다. 법무부 판단에 의해 '의사록인증제외대상 법인' 고시에 포함되면(추가고시), 해당 조합은 등기신청 시 공증문서(총회의사록) 대신 법무부 고시를 내면 됩니다.

083 사회적협동조합에 후원하는 기부금은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나요?

사회적협동조합에 기부한 금액이 기부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와 별개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주무관청(설립인가기관)에 신청합니다. 주무관청은 신청서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최종 검토하여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또는 반려합니다. 하지만 위탁사업형과 기타공익증진형 사회적협동조합 및 일반협동조합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Tip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시 유의사항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라, 지역사업형 또는 취약계층배려형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만 해당

1.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 [잘못된 사례] 유사한 다른 비영리단체, 유사한 다른 법인, 유사법인 또는 유사한 다른 단체.
2.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할 것.
   * 주무관청은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하여 추천서 (기부금의 용도 및 관리방법란)에 기재
3.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 58조 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
   *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
4. 지정요건 위반 등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할 것.
5.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 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을 포함.

084 처음에는 일반협동조합으로 신고하여 사업을 하다가 일정시점 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 2014년 12월 1일부터는 일반협동조합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사단법인으로 한정

한다. 이하 이 조와 제108조의2에서 같다) 및 법인등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 · 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085 독거노인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자원봉사로 장례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장례지도사 자격증 소지). 같은 뜻을 가진 동료들과 협동조합을 구상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장례서비스의 경우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모두 가능하지만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한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적합할 것입니다. 이후 장례지도사업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업 관련기관, 사회복지기관 등과 함께 연계하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자원봉사지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086 보건의료분야 협동조합을 규정하는 법률이 2개인 상태(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 협동조합기본법 중 사회적협동조합 부문)인데, 적용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설립과 운영 요건이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500인 이상의 조합원, 1억 이상의 초기출자금, 1인당 최저출자금 5만원 이상, 총자산 대비 출자금 납입비율

50% 이상 등). 의료부분의 독특한 성격(공공 영역), 유사의료생협과의 구분, 의료이용자를 소비자로 이해하는 것의 난처함 등의 이유로 의료생협연합회에서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87 설립신고서류는 무엇이며 유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문제점 및 유의사항
설립 신고서	설립신고인에 발기인이 아닌 대리인의 정보를 기입하는 경우. ➔ 대리인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나 설립신고인 란에는 발기인 중 1인으로 기입하여야 함.
정 관	1. 정관 작성 시 기본법상의 규정 된 내용을 임의적으로 수정하는 경우. ➔ 정관에 규정 된 내용 중 기본법상의 내용은 임의적으로 수정하지 않도록 함.(강화되는 조항은 가능함, 예) 법정적립금 20/100이상) 2. 협동조합에 대한 지식과 이해부족으로 정확한 조합유형을 정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정관 작성 시 유형별 선택항목을 정하지 못하거나 선택 항목을 통일되게 규정하지 못하는 경우. ➔ 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통해 사업계획에 맞는 조합유형 선택이 필요함. 3. 사업의 종류에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사업, 의료기관 설립 등을 규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 위 사업은 사회적협동조합에 해당하므로 일반협동조합의 정관으로 규정불가.
의 사 록	별도 양식이 없어 의사록을 부족하게 작성하는 경우. ➔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또는 참석자 명단), 의결권의 위임여부, 회의안건, 진행자 등을 기입하고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 · 지출예산서, 임원의 선출,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에 대한 회의내용을 기입 할 것.
사업 계획서	1. 사업계획서의 조합원현황의 직원과 바로 아래의 직원현황의 직원을 혼동하여 기입하는 경우. ➔ 조합원현황에서의 직원이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면서 직원인 사람을 뜻하며 직원현황의 직원이란 협동조합에 채용되어 급여를 받으며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을 뜻함.

사업 계획서	2. 정관에 나열한 사업의 종류를 사업계획서에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하거나 추상적으로만 기술하는 경우. ➔ 정관에 설립목적과 일치하고 현실 가능한 사업만을 규정하며 사업계획서에는 정관에 규정된 모든 사업의 종류에 대한 세부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가 일관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3. 사업계획서 작성 시 각 세부사업에 소요되는 예산계획도 함께 작성필요. 4. 사업계획서에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사업, 의료기관 설립 등을 기입하였는지 여부 ➔ 위 사업은 사회적협동조합에 해당하므로 일반협동조합의 사업으로는 불가. 5. 임원의 직원 겸직금지란? ➔ 임원인 이사와 감사가 직원을 겸할 수 없음
임원 명부	임원의 임원겸직 여부 파악의 경우.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직의 겸직 여부를 뜻 함.
설립 동의자 명부	설립동의자 수와 출자좌수 명단의 조합원수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
수지 예산서	출자금의 액수단위를 혼동하여 액수를 기입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
출 자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지 여부 확인.
창립총회 공고문	일시와 장소 행사일정 등을 기입하여 총회개최 7일전(공고일과 개최일 제외)에 공고하였는지 여부 확인.
명 칭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엽연초조합,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의 명칭과 이의 줄임명칭은 사용 불가.

088 협동조합을 창립하고 이제 설립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신고서류 접수는 어디서 하나요?

주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만, 조례에 따라 신고접수 업무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신고접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각 구청에서 설립신고서류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089 신고서류 중 사업계획서에는 구체적인 수치 계획을 포함해야 하나요? 수지예산서에 출자금, 차입금은 무엇을 말하며, 수입과 지출 총액의 차이가 발생해도 되나요?

사업계획서는 정관에서 정한 사업의 종류에 따라 가급적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수치계획도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지예산서 수입 항목의 출자금은 연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차입금은 조합원 또는 외부에서 차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수지예산서에서 수입이 지출보다 많을 때는 지출항목 중 차기이월금 항목에 차액을 표기하여 합계액을 동일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090 설립신고 등에 사용하는 인감도장은 어떤 것으로 해야 하나요?

설립신고인은 발기인(대표)이며 설립신고 시 발기인(대표)의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립등기신청은 이사장의 명의로 해야 하므로 이사장의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설립등기 신청할 때 법인의 인감도장을 신고해야 합니다. 설립신고, 공증, 등기, 사업자등록 등은 모두 법적인 처리사항이므로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091 대리인을 통한 접수가 가능한가요?

⇨ 대리인을 통한 접수가 가능 합니다. 대리인이 접수를 하더라도 협동조합 설립신청서의 설립신고인 란에는 발기인 중 1인으로 기입하여야 하며 신고인은 설립신고인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092 감사 1명을 외부에서 선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임원의 구성에 대해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이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즉 정관에서 정했다면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음). 참고로 표준정관 44조에서는 감사는 2분의 1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외부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합의 정관을 표준정관과 같이 정하였고 한 명의 감사만 선출했다면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표준정관 제44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 Tip 임원의 선출

협동조합기본법에는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한다는 내용만 명기하고 있어 조합원이나 비조합원 모두 임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자립과 자치, 민주적 운영이라는 원칙상 기본운영상 조합원 내에서 선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관에 구체적인 수치를 정해놓으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임원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093 출자금을 받을 때 통장은 누구의 명의로 개설해야 하나요?

설립 등기를 하기 전이므로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설립등기 전에는 이사장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출자금을 납입해야 하고 등기 후에는 법인명의의 출자금 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등기절차

094 등기할 때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 등기 시 납부해야할 금액의 종류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등기수수료와 공증비용이 소요됩니다. 영리법인인 일반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는 총출자금의 4/1000 또는 112,500원이고,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는 총출자금의 2/1000 또는 112,500원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100입니다. 또한 서울은 인구과밀억제지역이어서 3배의 등록면허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등기수수료와 공증비용이 각 3만원씩 소요됩니다.

지방세법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다.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11만2천5백원

마.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4만2백원

바. 그 밖의 등기: 건당 4만2백원

+ Tip

수도권 인구과밀 억제지역

서울시,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노동동만 해당),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095 등기 시 필요서류는 어떤 것들인가요?

설립등기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름다운협동조합만들기 93쪽

다운로드– http://www.iros.go.kr/pos1/pfrontservlet?cmd=PFrmGetRegistryFormC

① 정관 – 사본을 제출하되, 원본을 가지고 가서 보여주어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사록 – 공증을 받아야 하며, 사본제출, 원본을 가지고 가서 보여주어야 한다.

③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 · 초본 – 임원 모두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출자금 총액의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 반드시 금융기관이 작성한 증명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표자인 이사장 또는 출자금 영수증 등도 이에 해당함.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현물출자재산인계서 또는 출자재산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법인의 인감신고서

⑥ 설립신고필증

⑦ 등록면허세 영수증필확인서

⑧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설립등기신청서에 기재되는 ①목적②주사무소③이사(3명이상) 감사(1명이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④ 이사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⑤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⑥설립신고연원일 등은 등기부에 등기되는 항목이다.

협동조합기본법 제61조(설립등기)

①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협동조합의 설립신고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Tip 등기의 종류

설립 등 관련				합병 · 분할 등 관련		청산관련	
① 설립 등기	② 지사무소 설치등기	③ 이전 등기	④ 변경 등기	⑤ 합병 등기	⑥ 해산 등기	⑦ 청산인 등기	⑧ 청산 종결 등기
출자금 납입 후 14일 이내	지사 무소 설치 후 21일 이내	사무소 이전 후 21일 내	변경 후 21일내	합병 신고 후 14일 내	해산 시 14일내	청산인 취임 후 14일 내	청산 후 14일내

096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에 협동조합을 별도 구분하는 분류체계가 만들어지나요? 설립된 협동조합을 공시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협동조합은 법인등록번호를 구성하는 분류번호를 51번으로 부여받게 되어 등기부등본에서는 구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나 업태, 등록번호 등에서는 별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등기소에는 협동조합 등기부가 별도로 설치되며,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등에 경영공시자료를 공개하게 되어있습니다.

097 협동조합 등기는 사단법인처럼 주사무소 지역 등기소에 하는지 아니면 주식회사처럼 상업등기소에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원을 등기할 때 주소도 기재해야 하나요?

협동조합은 주사무소 관할 지역등기소에 등기합니다. 일반 임원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지만 이사장은 주소까지 등기됩니다.

098 등기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변경등기를 할 때 지자체에 변경된 내용을 신고하고 확인증 같은 것을 발급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인 증빙서류만 가지고 변경을 할 수 있나요?

현행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면 정관변경사항은 구청에 변경신고하고 확인증을 받아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 외 신고사항의 변경은 구청에 하지 않고 총회의사록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변경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면 2014년 7월 21일부터는 설립신고한 사항의 변경도 구청에 변경신고를 한 다음 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변경신고사항이 등기 변경사항이라면 구청으로부터 확인증을 수령한 후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정관)

② 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 ·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86조(정관)

②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2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099 설립신고를 마쳤는데 설립등기를 하기 전에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사무소가 정관에 작성된 주소지와 다르게 변경(다른 지차체로 이전)되었다면,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 변경을 의결해야 한 후(총회특별결의사항), 해당 자치구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그 후 창립총회 의사록과 정관 변경을 의결한 임시총회 의사록을 모두 공증받아 설립등기를 하면 됩니다.
만약 주소지가 바뀌었지만 자치구 내 변경이라 정관변경이 필요없다면, 이사회를 열어 주사무소 변경의 건을 승인한 후 바뀐 주소로 설립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정관)

② 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 ·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협동조합등의 정관 변경)

법 제16조제2항(법 제7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동조합등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관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3. 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 · 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좌 1좌당 금액 감소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0 등기 시에 제출하는 서류 중 출자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출자금납입증명서는 설립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사장 명의의 통장으로 출자금을 받은 후 완납된 날짜로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이사장이 직접 출자금납입확인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101 협동조합으로 설립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임원 중 한 분이 사정이 있어 사임을 했고 인감도장도 받을 수 없어 의사록 공증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원은 자의에 따라 사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의사록 공증의 문제이므로 필요한 서류를 공증사무소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총회의사록 공증을 위해서는 참석자들의 위임장(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을 필요합니다.

그런데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임원취임승낙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하고, 총회의사록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보완을 요구합니다.
또한 사임으로 인해 법이나 정관에서 정한 요건(이사 3인 이상, 감사 1명 이상)을 갖추지 못하면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다시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임을 확인하거나 임원을 교체선출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102 5명으로 설립신고를 마치고 신고필증까지 나왔는데 조합원 중 한명이 탈퇴했습니다. 그럴 경우 설립이 무효가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일단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설립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빠른 시기 안에 조합원을 충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설립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5인 이상이라는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103 조합원에게 출자금 납입 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합원들에게는 이사장의 확인이 들어간 출자금 증서를 발급합니다.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현물출자 재산인계서 또는 출자재산영수증을 발급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① 발기인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 & 영업신고

104 협동조합을 설립해 인테리어, 간판공사 등을 하려면 옥외광고등록증이 있어야 하는데 조합원 중 법인이 해당 면허가 있으면 협동조합은 없어도 되나요?

⇨ 인허가, 면허 등이 필요한 사업을 하려면 협동조합 법인 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면허를 취득해야 그 사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이 해당 인허가 사항이나 면허 등을 취득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운 영

변 경

105 서울시에서 설립한 후에 타 지역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타 지역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것은 정관의 주소지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먼저 총회에서 정관변경 승인을 얻고, 구청에 정관변경 신고를 합니다.

주소 이전에 따른 이전등기는 등기소에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소재지의 등기소에 이전등기를 하면 현소재지의 등기소로 자동 송부되기 때문에 이전등기는 전소재지에서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전할 지역에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협동조합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협동조합이 이전하려는 특별시, 광역시, 시 · 군에 있을 경우 이전할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2조(명칭)

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와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업 분야 및 내용, 사업구역,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과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에서 다른 협동조합등 및 다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등기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06 등기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변경등기를 할 때 서울시로부터 변경신고한 확인증이 필요한지 아니면 자체적인 서류만 가지고 변경등기할 수 있는지요?

현행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면 정관변경사항은 구청에 변경신고하고 확인증을 받아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 외 신고사항의 변경은 구청에 하지 않고 총회의사록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변경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면 2014년 7월 21일부터는 설립신고한 사항의 변경도 구청에 변경신고를 한 다음 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변경신고사항이 등기 변경사항이라면 구청으로부터 확인증을 수령한 후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정관)

② 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 ·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86조(정관)

②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2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07 협동조합으로 창립하고 등기까지 마쳤는데 주소 변경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현행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면 주소지 변경이 정관변경 사항이 아니라면 구청에 변경신고하지 않고 변경등기가 가능합니다. 정관에서 정한 주사무소를 변경해야 할 사항이라면 먼저 총회를 개최하여 정관변경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정관변경은 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므로 총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하고 참석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총회 의결을 받은 후에는 설립신고를 한 지자체의 장(구청장)에게 정관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그 이후 관할 등기소에서 변경등기도 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정관변경신고서와 총회 의사록,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면 2014년 7월 22일부터 설립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면 구청에 변경신고를 해야하고 변경사항이 등기변경 사항이라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108 설립 후 명칭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정관변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꿀 명칭의 중복여부 등을 확인하고, 총회를 열어 정관변경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후 구청에 정관변경신고를 하고 등기소에서 변경등기도 해야 합니다.

109 조합원의 변동이 있으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나요?

➪ 협동조합의 임원은 등기사항이나 조합원은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바뀌었다고 변경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합원 변동에 따라 출자금 변경이 일어나게 되는데, 출자금의 변경은 등기사항입니다.

Tip

등기변경 주요 사항

1.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주사무소의 변경
2. 출자금 총액의 변경
3. 임원의 변경
4. 정관의 변경

110 설립신고한 다음 등기하기 전에 임원이 변경되면 서울시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 2013년 8월 1일자로 협동조합에 관련한 업무가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로 이관되었습니다. 현행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면 임원변경은 정관변경사항이 아니므로 구청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원 변경은 변경등기 사항입니다.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면 2014년 7월 22일부터는 신고사항이 변경되면 구청에 신고해야합니다. 임원 변경 사항이라면 구청에 변경신고하고 변경등기해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설립신고 등) ➪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출자금과 지분

111 창립 이후 기존 조합원이 출자금을 증좌하거나 신규조합원이 출자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자본금 변경에 대한 신고가 필요한가요?

➪ 신규조합원 가입은 계속될 수 있으며, 기존 조합원의 증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출자금도 늘어날 것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출자금 변경은 변경등기를 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단, 변경될 때마다 변경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연도가 끝나면 최종출자액을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와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61조(설립등기)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목적, 명칭, 주사무소)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64조(변경등기)

①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112 현물출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물출자자도 1좌 이상의 현금출자를 꼭 해야 하나요?

현물출자는 정관에서 정한 내용이 있으면 가능한데 보통은 세부적인 절차나 방법을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회에서 해당 규약을 제정하면 그 규약에 따라 현물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의 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는 절차와 현물출자 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현물출자도 현금출자와 같은 출자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출자 및 책임)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협동조합 표준정관 제17조(출자)

⑥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113 표준정관에는 출자금 납입 시 2회 분할이 가능하게 되어있는데, 이를 3회로 늘려도 되나요? 예를 들어 1회 10%, 2회 40%, 3회째 50%로 해도 되는지, 납입기간도 6개월이 아니라 1년 정도로 늘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법에서 조합원은 1구좌 이상을 출자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표준정관에 의하면 출자금 분납은 할 수 있습니다. 분납이 조합사업의 이용과 조합활동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면 분납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납이나 분납의 비율이 조합사업의 이용과 조합활동에 문제가 없다면 조합 내부적으로 출자금 납부에 대한 방법을 결정하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정관에 의해 출자금 분납은 할 수 있으나 1회 분납 시 먼저 조합원 자격을 주는 것이므로 10%만 출자해도 자격을 주는 것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납입기한이 너무 길어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분납을 3회 이상으로 늘리더라도 1회분은 50% 이상 하도록 하고, 납입기한도 최대 당해년도 말까지로 해서 다음년도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출자 및 책임)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114 조합원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리고 조합원 사망 시 자녀에게 지분이 상속되나요?

기본적으로는 조합원의 지위나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보통 총회 승인을 얻는 경우는 사망 시 탈퇴처리하지 않고 상속인에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거나, 사정이 생겨 다른 조합원에게 지분을 양도할 경우입니다.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신규 가입으로 이해해 가입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4조(탈퇴)

③ 조합원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사 무 소

115 주사무소를 서울에 두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조합원은 주사무소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나요?

일반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업무구역의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에 지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16 서울에 주사무소를 내고, 지방에 지점을 내고 싶은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필요에 따라 규정으로 지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지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지사무소의 지점등기와 사업자등록도 해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 협동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배 당

117 출자 배당 시 먼저 가입한 조합원과 새로 가입한 조합원의 차이를 둘 수 있나요?

협동조합은 조합원 가입이나 이용 등에 있어서 차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 조합원과 나중에 가입한 조합원을 배당 시에 차이를 둘 수 없습니다. 다만 가입 시기를 고려하여 월 좌수 등을 기준으로 출자배당금을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배당에 관한 규약이 있어야 함).

협동조합기본법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50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18 이용배당에 따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배당을 주마다 또는 월마다 할 수 있나요?

배당을 할 때는 조합에서는 배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배당소득세 14%+주민세 1.4%). 배

당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결산 후 남은 잉여금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총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므로 1년 단위로만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협동조합기본법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50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19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않고, 출자배당만 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은 출자배당만 할 수 없습니다. 배당할 수 있는 총액의 50% 이상을 이용실적에 따라 먼저 배당한 후, 출자총액의 10% 이내에서 출자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당액의 결정은 총회에서 합니다.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
내용	조합원이 이용한 실적에 근거(예시) –소비자협동조합 : 구매금액 –직원협동조합 : 근로일수 등 –생산자협동조합 : 출하금액	출자금 납입액에 근거
금액	총 배당가능 금액의 50%이상	실제 납입 출자금의 10%미만
배당순위	1순위	2순위

120 직원협동조합에서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협동조합에서는 기본적으로 급여의 형태로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며, 결산 후 잉여금 처분을 할 때 배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에 따른 배당이란 이익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따라 배당한다는 의미이며, 조합원의 이용률을 정의하는 내용을 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배당에 대한 규약). 직원협동조합의 경우 이용율은 보통 노동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내용에 따라 적정한 방법을 찾아서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121 사업자협동조합에서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은 어떻게 하나요?

이용고 배당은 잉여 발생의 공헌도에 따라 배당한다는 것이며, 공동판매사업을 하는 사업자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통해 판매한 금액(협동조합 입장에서는 매입액) 등을 기준으로 배당합니다.

122 일반협동조합에서 무배당도 가능한가요?

➪ 배당을 하지 않고 사업에 재투자(조합의 사업 확장, 조합원을 위한 사업등)로만 하는 것은 이사회 논의 후 총회 시에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승인을 거치거나, 정관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Tip+

배당을 하지 않는 규정을 정관에 삽입하는 예

표준정관 제64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조합은 제63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61조 및 제62조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배당을 하지 않는다.

조합원(제명, 탈퇴)

123 조합원의 제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합원의 제명은 총회에서만 가능하며 특별결의사항이므로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총회출석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합은 제명하고자 하는 조합원에게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제명 사유를 통지해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총회에서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의결한 제명 결정은 해당 조합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5조(제명)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24 탈퇴 시 출자금(지분)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탈퇴 조합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청구권은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면 2014년 7월 22일부터 출자금의 환급은 총회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8의2.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협동조합기본법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125 탈퇴 시에 손실금을 반영하여 출자금 돌려받는 것인가요?

총회에서 손실 누적으로 출자금 감좌 결의를 하면 탈퇴 시 감좌된 출자금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총회 이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7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126 조합원의 책임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조합원은 자신이 출자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출자 및 책임)

⑤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정기총회

127 총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통해 선거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에 한해 대리인을 둘 수 있으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합니다.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3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 · 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128 대의원 총회의 의결 사항과 일반 총회의 의결사항이 같은가요? 대의원도 대리인을 둘 수 있나요?

조합원이 200인 이상이면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습니다. 대의원총회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합병 ·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고 대의원의 대리인은 둘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31조(대의원총회)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 Tip

총회와 대의원 총회 비교

	총회	대의원총회
설립 요건	모든 조합	조합원 200명 이상 조합
구성	이사장+조합원	이사장 + 대의원
구성수	전체 조합원	정관으로 정함 (2014.7.22부터 총조합원의 10/100이상 또는 100명)
의결방식	1인1표	1대의원 1표
의결권 위임	○	×
의사결정 기능	정관, 규약변경 임원선출, 해임 사업계획 승인 조합원 제명	'총회'와 동일 단, 합병, 분할 및 해산은 의결할 수 없음

129 대의원총회를 하려면 조합원수가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하나요? 대의원의 정수를 정한 법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정하나요? 대의원 선출방법을 정관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대의원은 어떻게 선출합니까? 대의원도 등기해야 하나요?

조합원 수가 200명 이상이면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습니다. 대의원 선출에 대한 내용은 정관에서

정합니다. 선출 방법은 조합원의 구성과 사업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조합원에 의해 선출되어야 합니다. 대의원은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31조(대의원총회) ➪ **2014.7.22부터 시행**

① 조합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④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⑤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협동조합의 합병 ·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⑥ 대의원의 임기, 선출방법 및 자격 등 대의원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사 업

130 기본법 제9조 공직선거의 관여금지조항에서 '공직선거'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공직선거법에서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공직선거의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 · 국회의원선거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 · 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1 생협 내에 설치되어 활동 중인 식생활교육센터를 협동조합으로 설립 검토 중입니다. 생협 부설기관으로 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은 법인 사업체이므로 부설기관이 될 수는 없고 별도의 법인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독자적으로 사업과 운영이 될 수 있다면 협동조합으로 독립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32 조합원 아닌 사람에게도 홍보나 판촉을 위해 유 · 무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수 있나요?

사업자협동조합이나 직원협동조합의 경우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조합원의 사업 이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비자협동조합의 경우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조합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홍보목적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비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9조(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협동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기관 · 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협동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

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7.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 · 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대상으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8. 협동조합(「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이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홍보기간"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總供給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협동조합이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날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9.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10.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협동조합이 전체 직원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11. 그 밖에 협동조합의 사업 성격 · 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 제5호의 "조합원"은 "회원"으로, 제8호 본문의 "시 · 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제9호 및 제10호의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

133 협동조합에서 비조합원 이용금지 조항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도 일정한 절차가 필요한데 실무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을까요? 가입하면 조합원의 권리나 의무가 동일한데 외부의 불순세력이나 원치않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비조합원 이용금지

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 일정규모가 되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처럼 조합원 가입 절차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전산)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원칙 않은 사람이라도 조합에 위해를 끼치지 않으면 가입을 제한하거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단 최소한의 조합원 자격을 정관에 명시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소수에 의해 조합 운영이 좌우되지 않도록 민주적인 절차와 훈련을 보강해가야 합니다(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운영). 비조합원 이용에 대한 제제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19조(과태료)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6조, 제81조 및 제95조(제1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원등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등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134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에서 시행령 제9조 1항 8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홍보기간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홍보기간은 기간을 나누어도 되나요?

⇨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에 신고한 기간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總供給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협동조합이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서식에 있는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할 시도 담당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9조(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8. 협동조합(「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이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홍보기간"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

을 넘지 못한다)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總供給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협동조합이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날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35 결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협동조합 설립 후 계속되는 적자나 그 결과로 파산 등을 하게 되면 조합원은 어떤 피해가 있고, 채권자는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결손이 발생되면 일단 이월손실금으로 이월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조합원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속되는 결손을 보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통해 출자 감소를 하거나 최종적으로는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유한책임제). 채권자는 법인에게 청구권을 행사하며 채무불이행시 민사상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출자 및 책임)

⑤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136 특정한 영역의 사업체가 현재 우리나라에 5곳이 전부인데, 그 업체가 모두 모여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가격 담합이나 독과점의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까요? 업체가 모여 협동조합을 만들어 대형프로젝트 등에 제안서를 제출할 때 조합원인 업체들의 실적을 협동조합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기본법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해야 합니다.

법인조합원의 실적을 협동조합의 실적으로도 인정할 수 있는지는 발주업체의 자격 요건이나 해석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자명이 다르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실적으로 제출할 수는 없겠으나 구성 업체를 설명하면

서 해당 업체들의 실적을 추가한다면 참조자료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7 초기에 경영이 어려워 가입하는 조합원에게 입회비를 받아 사무실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나요? 사업자협동조합에서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 일정비율을 회비로 내게 해도 되나요? 자체적으로 연금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협동조합의 자산을 구비하기 위해 모으는 것은 출자금이며, 탈퇴할 때는 돌려주어야 할 금액입니다. 일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수익이나 기타 수입이 있어야 하며, 이 수입으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정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비를 받을 수는 있으나 사업외수익에 속하며, 기본적으로는 사업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사내 연금사업은 보험업과 관련된 사업에 해당하므로 불가능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45조(사업)

③ 협동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138 사업 초기에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가 예상되는데 문제없을까요?

기본적으로 수입과 지출 규모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에 투자 성격의 비용이 많다면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적자를 어떠한 계획에 따라 해소해갈 것이며, 그 계획이 현실 가능하도록 조합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139 협동조합에서 채권 발행이 가능한가요?

협동조합은 은행이나 조합원에게 대출을 받을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채권(회사채 등)을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140 법정적립금이 있는데 왜 임의 적립을 해야 하나요?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의 용도가 다릅니다. 법정적립금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사업준비금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임의적립금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이하 "임의적립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협동조합 표준정관 제62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61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분의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141 협동조합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협동조합 법인은 지사무소를 둘 수 있고 주식회사 형태로 자회사를 둘 수도 있습니다.

관리 감독

142 사무국에 대한 관리감독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조합의 경영상태와 회의결과 등을 공개해야 하므로 조합 사무실에 가서 해당 내용의 공개를 요청하고 열람할 수 있으며 사본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개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게 임시총회를 열어 어떻게 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지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그 내용을 조합원들이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이나 이사가 총회소집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합원 1/5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대표가 이사장에게 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장이 소집 청구가 있음에도 2주 내에 소집절차를 밟지 않으면 감사에게 그 역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도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총회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49조(운영의 공개)

① 협동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정관 · 규약 · 규정, 총회 · 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한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43 협동조합 사무국에서 출자금을 다 썼다고 하면서, 조합을 계속 운영하려면 조합원을 더 모아오라고 합니다. 사무국의 자금 운용에 대해 외부에서 감사해 줄 수 있나요? 조합의 상황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횡령 등의 문제가 있으면 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조합의 경영상태와 회의결과 등을 공개해야 하므로 조합 사무실에 가서 해당 내용의 공개를 요청하여 열람할 수 있고 사본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총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원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 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도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만약 횡령을 한 경우에는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협동조합 내부에서 적절한 절차나 논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인가 또는 신고부처에게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조사나 감독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임원과 직원

144 교육사업을 하는 주식회사이며 직원 약 20명입니다. 이번에 직원들이 조합원이 되는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모든 직원에게 1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호하는 위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도 있는데 이를 어떻게 배분하면 좋을까요? 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약에 따라 설치할 위원회의 종류, 역할, 위원선임 등의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설치하며, 기본적으로는 이사회를 자문하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 관심이나 능력이 있는 조합원 또는 외부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이사회가 위촉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위원회는 이사회의 자문기관이지만 필요에 따라 일정 부분의 의결권을 위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협에서는 물품위원회에 물품의 선정, 개선 등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직원협동조합의 모든 직원이 '위원회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지? 사무국 직제와 중복 또는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지?'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설치할 위원회를 정하고, 그 취지에 적절한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회는 협동조합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조합원의 참여를 풍성하게 하는 방안입니다. 모든 조합원이 모여서 필요한 위원회를 만들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협동조합 표준정관 제4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제5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Tip

조합원의 참여를 위한 활동

협동조합들은 조합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 분과, 소모임, 지역모임, 건강소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한 사업으로 조합원들의 결속을 다지게 하고 협동조합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기반입니다.

145 직원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직원협동조합의 직원조합원은 동시에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하고 4대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60시간 미만 단기간근로자는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아닌 조합원은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146 임원이면서 직원처럼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직원협동조합과 조합원이 10명 미만인 소규모 협동조합 등 임직원 겸직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원은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는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근 임원은 직원으로서의 급여가 아니라 임원으로서의 실비 또는 보수를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원에게 보수를 준다고 해서 직원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동조합 표준정관 제49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147 이사장이 사임했습니다.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새로 이사장을 선출하기 전까지는 정관에 따라 권한대행자를 정할 수 있으며, 권한대행자가 이사장의 모든 역할을 집행하면 됩니다. 임원선출공고를 하고 절차에 따라 총회에서 새로 이사장을 선출하면 권한대행자가 새로 선출된 이사

장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합니다. 새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는 보선으로 선출된 것이므로 전임 이사장의 남은 임기까지입니다. 새로 선출된 임원과 사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2014년 7월 22일부터는 해당 자치구에 변경신고도 해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설립신고 등) ⇨ 2014년 7월 22일부터 실시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4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협동조합표준정관 제50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148 일반 회사원이 회사 근무와 별도로 직원협동조합에 참여하거나 이사직을 맡을 수 있나요?

⇨ 직원협동조합에 참여하는 것이 직원이면서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것이라면 이중취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중취

업이 협동조합기본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회사의 사규에 이중취업 금지조항이 있다면 직원협동조합에 직원으로 참여해서는 안됩니다. 협동조합의 임원도 마찬가지로 회사의 사규를 살펴보고 가능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149 임원이 되면 모든 경제적 손실에 책임 져야 하나요?

➪ 협동조합의 임원은 기본적으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며 결손에 대한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손실을 발생시킨 중요한 의사결정에 찬성하였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39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 · 규약 ·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협동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150 정관, 규약, 규정을 제 · 개정 할 수 있는 기구는 어디인가요?

➪ 정관과 규약은 총회에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 · 개정(변경)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7조(규약 또는 규정)

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 ·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 · 분할 ·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동조합기본법 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 ·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연 합 회

151 연합회 창립총회를 할 때는 임원선출을 어떻게 하나요? 임원은 회원이 아니어도 가능한가요?

연합회는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연합회 임원은 정관에 따라 선출하면 되는데, 보통은 회원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회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34조(임원)

①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 · 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75조(의결권 및 선거권)

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

152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협동조합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나요?

일반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연합회로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만 연합회 구성이 가능합니다. 연합회의 회원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체는 연합회(법인)가 아닌 '협의회'(협동조합법인은 아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73조(회원의 자격)

① 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으로 한다.

②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14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 환

153 현재 주식회사 형태로 있는 법인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때 사업목적이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기존 법인의 정관을 바꾼 후 협동조합으로 전환해도 되나요?

협동조합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새로 설립된 협동조합이 기존 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 등을 승계하여 동일법인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2.12.1 이전에 세워진 법인이 전환하려면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목적이 유사하다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업태가 같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정관과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유사한 목적과 유사한 사업임을 증빙해야 하고 협동조합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각종 회의록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협동조합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법인이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8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은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의2(법인등의 조직변경) → 2014.12.1부터 시행

①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105조의2에서 같다)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

다. 이 경우 기존의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 · 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Tip 업태 확인법

인터넷 검색 통계청 홈페이지 → 통계분류 클릭 → 한국표준산업 분류 클릭 → 검색 클릭 → 사업명 입력 → 검색 클릭

154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준비 중입니다. 자활센터 적립금을 협동조합에 기부할 수 있는지요?

사회적협동조합이 기부금인정단체, 공증면제단체 등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면 해당부처 승인을 받아 지정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인정단체가 되면 지원하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면 2014년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 주식회사 등 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정을 통해 새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의2(법인등의 조직변경) 2014.12.1부터 시행

④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50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2014.12.1부터 시행

④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97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단 ·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신청이 가능함

①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정관 목적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 정관에 상기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규정. [잘못된 사례] 유사한 다른 비영리단체, 유사한 다른 법인, 유사법인 또는 유사한 다른 단체

③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연간 모금액 및 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할 것

* 주무관청은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하여 추천서(기부금의 용도 및 관리방법 란)에 기재

④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후보를 지지 ·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 것

⑤ 지정요건 위반 등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155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한 법인격은 어떤 것들인가요?

공동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상법상 회사,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 특별법상 법인,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단은 전환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혼자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나 민법상 또는 특별법상 재단법인은 그 속성상 전환에 대한 의결권한을 가진 구성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환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2014년 12월 1일부터는 법인격이 없는 사업자나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 Tip 협동조합의 전환

[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음

공동운영하는 개인사업자 (O)

실질적으로 1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X)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전환 불가)

[법인인 경우]

상법상 회사(주식회사 ·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 (O)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 (O)

각종 특별법상 법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O)

+ Tip

민법상 또는 특별법상 재단법인 (X)

"재단법인도 법인이긴 하나, 그 속성상 전환에 대한 의결권한을 가진 구성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법인은 아니나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인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O)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단 (O)

156 예비사회적기업인 주식회사를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이사는 기존 회사의 이사가 계속 해도 되나요? 이사장은 두 명을 선임해도 될까요?

기존 주식회사의 전환총회와 새로운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거쳐야 합니다. 주주의 주식비율 조정, 채권자의 동의, 기존 회사의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한 처리 등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협동조합의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설립 동의자의 의결로 선출됩니다. 기존 회사의 임원이더라도, 창립총회에서 선출되지 못하면 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협동조합에서 복수의 이사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Tip 전환 세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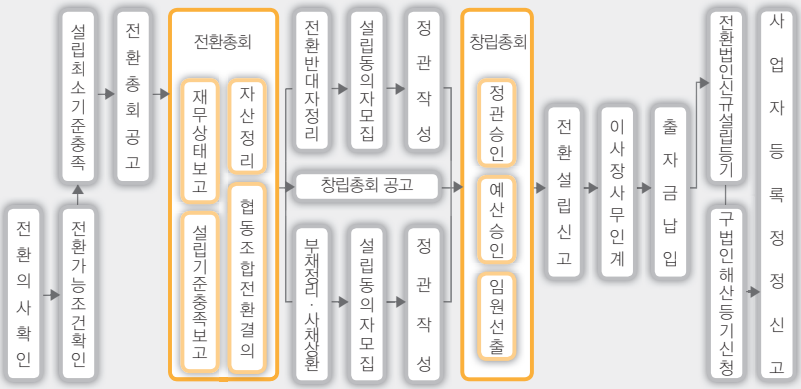

157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았습니다. 법적 주체의 명확성이 없어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임차보증금 등의 이유로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동조합 전환과정에서 차입한 채권자(은행 등)의 전환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그 전에 상환 등을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전환이 어려우면 새로 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필요한 부분을 양도양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기존의 업력이 계승되지는 않습니다.

158 마케팅광고회사(개인사업자)를 운영 중인데, 직원들과 함께 운영하는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이더라도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으로 운영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대표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자라고 한다면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필요하면 기존 사업체의 권리나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159 주식회사를 직원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회사 명칭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른 형태의 법인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협동조합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에서 다른 협동조합이 이미 등기한 명칭이 있으면 같은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Tip

협동조합 명칭

– 명칭 중복 확인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중앙의 열람에 "법인" 클릭 → 상호로 찾기에 "전체등기소"선택 → 법인구분에 "전체법인"으로 검색 → 상호입력 후 동일명칭의 법인이 있는지 확인

160 전환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가 부과되는지요?

명칭이 협동조합 등으로 변경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산 및 권리의 이전을 원인으로 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만 각종 명부 상 표시변경 등기를 할 때 발생하는 등록세 등의 세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분을 정리할 때 주식의 양도 · 양수에 따른 주주 개인에 대한 세금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61 협동조합 전환 시 기존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두 변경해야 하나요?

법인등록번호는 변경되지만, 사업자등록번호는 유지됩니다. 이를 위해서 협동조합 전환 시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 산

162 설립등기까지 하였으나 사정이 생겨 해산해야 할 상황입니다. 해산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총회를 열어 해산을 의결하고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장이 되지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청산인은 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재산처분 방법을 정해 청산 총회를 열어 승인을 얻고, 승인 결과에 따라 잔여재산을 처리함. 해산등기, 청산인등기, 청산종결등기 등의 등기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해 산 절 차

해산 사유발생 → 청산인 선임 → 청산인 등기 → 채무변제 → 해산신고 시도지사 → 해산등기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해산)

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 분할 또는 파산

②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59조(잔여재산의 처리)

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163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일반협동조합이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고 6개월간 사업실적이 없으면 폐업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안에 주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2회 이상 제111조제5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Cooperative

05

부 록

일반협동조합 신고 관련 양식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협동조합
[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설립신고인	성 명(명칭)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설립동의자 수	총 출 자 금 액	발기일 및 창립 총회 개최일

법 인	조합명(연합회명)	전화번호
	소재지	
	이사장(회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시·도지사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임원 명부(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첨부) 1부 5. 설립동의자 명부 1부 6. 수입·지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설립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확인 및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협동조합등 사업계획서

(제1쪽)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합회 가입 현황(* 협동조합만 작성)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원	

	연 월 일	주요 내용
조직 연혁		

설립 목적	
의사결정 기구	[ ]조합원 총회 [ ]대의원 총회 [ ]이사회 ※ 중복 표시 가능
조직도	

임원 현황	직위	성명	경력	직원 겸직 여부

조합원 현황 ※ 해당유형에만 표기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계
	명	명	명	명	명	명

직원 현황	명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부록

해당연도 사업계획	정관의 사업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 특히 아래 사업에 대한 계획 필히 포함(협동조합법 45조)작성 -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 협동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작성방법
해당연도 사업계획란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운영계획(예시)

<table>
<tr><td rowspan="2">세부사업내용</td><td colspan="3">세부사업명 :</td></tr>
<tr><td colspan="3">필요성

추진내용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마케팅)</td></tr>
<tr><td rowspan="5">예산계획</td><td colspan="3">소요예산 :　　원</td></tr>
<tr><td>세목</td><td>내역</td><td>금액</td></tr>
<tr><td>예) 일반운영비</td><td>예) 전화,전기,수도등 공공요금</td><td>원</td></tr>
<tr><td>예) 홍보비</td><td>예) 전단지배포</td><td>원</td></tr>
<tr><td>예) 인건비</td><td>예) 00명 × 00일×000원</td><td>원</td></tr>
<tr><td>기대효과</td><td colspan="3"></td></tr>
</table>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협동조합
[ ] 협동조합연합회 정관변경 신고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 명(명칭)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법 인	조합명(연합회명)	전화번호
	소재지	
	이사장(회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첨부서류 참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7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을 변경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이사장·회장)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1부 3. 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 1부(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출자 1좌당 금액 감소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확인 및 검 토	→	결 재	→	결과 통지
신고인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협동조합
[ ] 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청산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첨부서류 참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제2항 또는 제8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이사장・회장)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확인 및 검토	→	결 재
신고인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부록

임 원 명 부

연번	성 명	주민번호	현주소	약력	임원 겸직 여부

사진 3cm X 4cm	이 력 서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서기 년 월 일생 (만 세)		
주 소		자택전화	
		휴대전화	

년 월 일			학 력 및 경 력 사 항	발 령 청

* 본 양식은 이력서 양식 중 하나로 일반적인 이력서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협동조합 신고수리 기관(자치구)별로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등록기준지' 기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설립동의자 명부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비고

수입지출 예산서

(제1쪽)

회계연도 : 000년도

조직 개요	조합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연월일		업태
	협동조합 신고(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사	
		제1사업장	
		제2사업장	
	출자 자본금	원	

수입 (단위:원)			지출 (단위:원)		
구분		금액	구분		금액
① 전기이월금			① 경상비	인건비	
② 주사업수입	*00사업*			운영비	
	00사업			소계	
	00사업		② 주사업비	*00사업*	
	소계				
③ 부대사업수입				소계	
④ 사업외수입	기부출연금		③ 부대사업비		
	지원금		④ 사업외지출	기부출연금	
	기타			지원금	
	소계			기타	
⑤출자금				소계	
⑥차입금					
⑦기타수입			⑤출자금반환		
			⑥차입금상환		
			⑦배당금		
			⑧기타지출		
			⑨차기이월금		
합계			합계		

출자자 명부 및 출자액

출자 1좌당 금액 :　　원

연번	출자자명	현주소	인수 출좌수	납입금액(원)
합계	00인		00좌	000원

위는 ○○○협동조합의 출좌명부임을 확인합니다.

2013년 00월 00일

000000 협동조합

이사장　000 (인)

(가칭)○○○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공고

(가칭)○○○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설립에 동의하신 분들은 참석하셔서 의결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 일　시 : ○○○○년 ○○월 ○○일 ○○시
▣ 장　소 : ○○구청 강당
▣ 참가자격 : (가칭)○○○협동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

▣ 안 건
- 제 1 호 의안. 정관(안) 및 규약(안) 승인
- 제 2 호 의안. 임원 선출
- 제 3 호 의안. 2013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 제 4 호 의안. 주사무소 설치 승인
- 제 6 호 의안. 설립경비 및 설립에 필요한 사항
- 제 7 호 의안. 기타안건

○○○○년 ○○월 ○○일

(가)○○○협동조합 발기인회
발기인대표 ○ ○ ○ (인)

1. 정관 주요 조항

1) 제2조 목적

작성 방법 : 조직의 목적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실현하고자하 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사례

① ○○○○협동조합은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조합은 지역의 예술교육의 필요성과 욕구를 이해하고 예술가들의 연대를 이끌어내어 조합원들로 하여금 예술적 문화를 쉽게 접하고 지역에서 예술가와 조합원이 교육과 창작, 생산을 함께하며 상호발전하는 지역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동조합은 “나의 행복은 가족의 행복, 가족의 행복은 마을의 행복”이라는 이념아래 정신건강 유지 및 문제해결을 위해 치유관련 조합 활동가와 치유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을 통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공간과 종합적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으로 정신건강 유지관리 및 문제예방과 치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돌봄사회적협동조합은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및 기타 돌봄 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을 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에 기여한다. 또한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조합원의 경영개선 및 생활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부모협동조합은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공동육아, 공동구매, 육아관련사업, 지역사회복지사업을 하며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조합원의 경영개선 및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2) 제55조 사업의 종류

작성방법 : 사업의 종류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을 기재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사업계획일 경우에는 세부사업계획서에 그것을 실현하려는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사례

1. 디자이너되기 프로그램(공방프로그램) 운영
2. 리싸이클 아트
3.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4.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5.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1. 공동육아 사업
2. 공동구매 사업
3. 어린이집 사업
4. 장난감 대여 사업
5. 방과 후 수업, 돌봄 사업
6.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7.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8.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2.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4. 문화관광 사업
5. 공동브랜드 상품화 및 판촉 사업
6. 문화교육 사업
7. 아카데미 사업

---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2.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4. 커피 및 식음료 무역, 제조, 생산 및 가공
5. 커피 및 식음료 도매, 소매 판매, 인터넷 쇼핑몰
6. 여성 인권 및 권익 증진 사업
7. 직업능력 개발사업

3) 제17조(출자)

작성방법 : 조합원은 기본 출자를 1구좌 이상을 해야 합니다. 1구좌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일하게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운영상 또는 조합원의 유형별 기본 출자금의 기준을 다르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50,000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④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

---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② 조합의 설립동의자가 최초로 납입하는 출자금 총액은 3,500,000원이다.
③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산자 조합원과 직원 조합원은 최초 10좌 이상의 출자금을 일시에 납입하고 30좌가 될 때까지 계속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 최초 출자금을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⑥ 조합에 납입한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⑦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

4) 제46조(임원의 임기)

작성방법 :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임원의 임기를 4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하며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장 12년 동안 이사장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부 협동조합은 연임의 회수를 1차로 줄이기도 합니다.

사례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5) 제64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작성방법 : 협동조합은 목적에 있어 이윤의 창출보다는 조합원들의 생활의 질 향상을 우선시합니다.

사례

① 조합은 제63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61조 및 제62조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배당을 하지 않는다.

2. 사업계획서

1) 자체 사업계획 사례 ①

세부사업명 : 정신건강을 위한 치유사업

세부 사업 내용

필요성
- 정신건강 유지 및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과 종합적 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저인 협동조합 간의 연대 사업 및 자체 활동으로 조합의 발전, 확장, 성장을 이루기 위해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등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사업을 운영한다.

추진내용
- 직장인 힐링 프로그램
- 지역조사(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엄마들의 숲 이야기
- 성동네트워크 활동
- 힐링캠프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마케팅)
- 직장인 힐링프로그램 : ○○생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
- 지역조사 : 조사지역을 정하고 기간과 조사 유형을 정한다.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 제안서 제출
- 엄마들의 숲이야기 : 마을프로젝트사업으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 제안서제출
- 성동네트워크 : 성동구 관내 67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숲체험활동 진행
- 힐링캠프 : 한부모가정과 청소년등을 대상으로 사업 진행

예산 계획

총 수입예산 15,800,000원

세목	내역	금액
강사비	힐링프로그램 강사비	300,000원
외부지원	지역조사	1,000,000원
강사비	성동네트워크 강사비	8,000,000원
외부지원	엄마들의 숲이야기	5,000,000원
외부지원	힐링캠프	5,000,000원
수입합계		19,300,000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5개월×30만원	1,500,000원
인건비	1명×5개월×400,000원	2,000,000원
지출합계		3,500,000원

기대 효과

지역에 조합을 알릴 수있다.
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펼칠 수 있다.
수익모델이 되는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다.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 발전시킬 수있다.
지역단체와 연대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2) 자체 사업계획 사례 ②

세부사업명 : 디자이너되기 프로그램(공방프로그램) 운영

세부 사업 내용

필요성

- 창작이란 매개로 조합원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고 색다른 관점을 갖게 됩니다. 또 단순한 재료의 조합이아닌 디자인의 체계적인 과정과 창작하는 방법, 철학세우기를 통해 깊이있는 자기 공부와 연구를 하게 됨으로써 급변하는 사회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디자이너가 됩니다. 창작활동으로써 조합원들이 삶에 자신감과 교육으로 더 많은 기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한 일용직 노동자가 아닌 생각하고 움직이는 능동적인 디자이너들을 배출할 역동적인 예술교육 필요합니다.

추진내용

- 대상 :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 내용 : 1. 디자이너 되기 프로젝트 수업
  2. 수공예 테크닉 강좌(주얼리, 유리공예, 칠보공예, 금은 세공)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마케팅)

- 일정 : 수업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과제 선정(2013.8)
  프로그램 선정(2013.10)
  강사선정(2013.10)
  사업 홍보(2013.9)

예산 계획

소요예산 : 4,900,000원(월기준)

세목	내역	금액
일반운영비	재료비, 공공요금	500,000원
홍보비	전단지 배포	400,000원
인건비	2명×20일×100,000원	4,000,000원

기대 효과

주얼리 디자인과 다양한 테크닉을 배울 수 있는 지역의 유일한 공간이 된다.

3)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계획 사례

세부사업명 :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세부 사업 내용

필요성

-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리더쉽 교육, 재능발굴을 통한 자존감 향상, 나아가 조합의 주된 서비스인 정신건강 관련 문제 예방과 정서안정을 위한 치유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조합원 및 직원에게 건강한 정신을 유지시키고 직원의 역량강화로 업무능력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추진내용

- 임원의 직무수행 및 역량강화
- 기존조합원 및 신입조합원 협동조합 교육
- 프로그램 매뉴얼 작업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마케팅)

- 임원을 위한 마음열기 및 명상 프로그램을 월 1회 이상 진행
- 기존조합원과 신입조합원 교육
  협동조합 교육, 힐링부문 역량강화교육 진행
- 신입조합원 협동조합 교육 : 연 2회(상하반기) 진행
- 기존조합원 협동조합 교육 : 연 1회 진행
- 미술치료, 명상, 독서치료, 숲힐링등 프로그램 매뉴얼 제작

예산 계획

소요예산 : 400,000원

세목	내역	금액
일반운영비	진행비	100,000원
인건비	강사료 2회×15만원	300,000원
합계		400,000원

기대 효과

- 지역주민과 조합원 및 직원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경허하고 실생활에서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 조합원들의 재능발굴과 리더쉽 교육으로 초보자도 쉽게 자신감을 얻고 조합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4) 협동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계획 사례

세부사업명 :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세부 사업 내용

필요성

- 조합간의 이해 및 교류를 통해 마을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조합의 지속성장과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추진내용

- 대상 : 지역의 협동조합
- 내용 : 월 1회 지역 협동조합과 미팅, 커뮤니티를 통한 화합 도모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마케팅)

- 일정 : ○○협동조합과 월 1회 정기 모임 계획
  ○○지역 협동조합들과 월1회 정기 모임

예산 계획

소요예산 : 130,000원

세목	내역	금액
일반운영비	진행비	100,000원
교통비	교통유료비	30,000원
합계		130,000원

기대 효과

- 지역의 여러 협동조합간의 교류를 통한 신뢰관계 형성
- 조합의 성장 발전의 기반 마련
- 조합을 홍보
- 지역에서 협동조합의 인지도 상승을 위한 기반 마련

5)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계획 사례

세부사업명 :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세부 사업 내용

필요성

- 지역 주민, 불우한 이웃을 대상으로 공강 강좌 할인 혜택등을 부여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건전한 문화 보급에 그 필요성이 있다.

추진내용

- 저소득 가정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직업체험 및 진로탐색
-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을 활용하여 조합을 홍보
- 지역사회 자료 공유 및 지역단체들과 협력 사업
  지역내 각종 연합행사에 참여
  지역의 단체들과 정보공유 및 지속적 교류 사업 진행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마케팅)

- 하계중학교 방과후 교육 실시
- 영신여자고등학교 방과후 교육 실시
- 지역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조합 홍보
- 지역 단체들과 함께하는 각종 연합행사에 참여

예산 계획

소요예산 : 515,000원(월기준)

세목	내역	금액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115,000원
홍보비	전단지 배포, 카페 개설	400,000원
합계		515,000원

기대 효과

-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 교류함으로 지역에서의 기반 마련
- 지역주민과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자립성 향상

3. 창립총회의사록

○○○○ 협동조합 창립총회 의사록

1. 회 의 명 : ○○○○협동조합 창립총회
2. 공 고 일 : 201 년 월 일
3. 개최일시 : 201 년 월 일(요일) 시 분
4. 개최장소 :

5. 창립총회

가. 성원보고

설립동의자 ○○명 중 ○○명이 참석하였으므로 성원이 됨을 확인하다

나. 개회선언

발기인대표 ○○○가 창립총회 개회를 선언하다.

(시 분)

다. 총회의사록 서기와 총회의사록 날인인 선임

의장이 의사록 서기로 ○○○ 설립동의자(조합원)을, 서명날인인으로 ○○○, ○○○, ○○○ 설립동의자(조합원)을 의사록 서명날인인으로 선임하다.

라. 경과보고

발기인 ○○○가 그동안의 설립 경과를 보고하다.

마. 의사일정 확정

의장이 발기인회에서 공고한 순서에 따라 의안을 심의할 것을 제안하자 참석자 전원이 찬성하여 제안대로 일정을 진행하기로 하다.

바. 의안 심의

(1) 정관 및 규약 확정의 건

발기인 ○○○가 자료에 의거하여 정관(안)과 제규약(안)을 제안 설명하다.

○○○설립동의자(조합원)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하고 ○○○ 설립동의자(조합원)이 제청하며 참석자 전원이 찬성하여 확정하다.

(2) 임원 선출의 건

발기인 ○○○가 발기인회에서 논의하여 초대 임원으로 ○○○, ○○○, ○○○, ○○○을 이사 후보자로, ○○○을 감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음을 보고하다.

의장이 발기인회 추천자 외에 다른 추가 추천이 있는지 묻다.

다른 추천이 없자 추천된 임원의 승인 여부를 묻다.

이에 참석자 전원이 찬성하여 추천한 바와 같이 선출할 것을 결정하다.

의장이 이사장은 선출된 이사 중에서 선출해야 함을 설명하고 이사들이 협의하여 이사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잠시 휴회를 선언하다.

의장이 회의를 속회하겠다고 하고 이사회에 이사장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다.

○○○이사가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이사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한다고 하다.

의장이 추천된 후보의 이사장 선출 여부를 묻자 참석자 전원이 찬성하여 제안대로 결정하다.

의장이 아래와 같이 이사장 및 이사, 감사가 초대임원으로 선출하였음을 선포하다.

■ 이사 : ○ ○ ○(이사장), ○ ○ ○, ○ ○ ○, ○ ○ ○

의장이 이사장이 선출되었으므로 앞으로의 안건은 신임이사장이 진행할 것이라고 하고 의장석에서 내려오다.

○ ○ ○이사장이 의장석에 착석하고, 간단한 인사말을 하다.

(3)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발기인 ○ ○ ○가 자료에 의거하여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제안 설명하다.

○ ○ ○설립동의자(조합원)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하고 ○○○ 설립동의자(조합원)이 제청하며 참석자 전원이 찬성하여 확정하다.

(수정 제안이 있으면 제안자와 제안 내용, 이에 대한 처리 여부를 기재)

(4) 주사무소 설치 승인의 건

발기인 ○ ○ ○가 주사무소 설치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다.

○ ○ ○설립동의자(조합원)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하고 ○ ○ ○설립동의자(조합원)이 제청하며 참석자 전원이 찬성하여 확정하다.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상계2동 389-583 덕원빌딩 2층)에 두기로 확정하다.

(5)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처리의 건

의장이 기타 안건으로 우선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다.

이에 발기인 ○ ○ ○가 특별히 설립경비가 발생한 것이 없으므로 별도로 처리할 것이 없다고 하다.

의장이 기타 안건으로 논의할 것이 없는지 묻고 의견이 없자 의견심의를 마치겠다고 하다.

(6) 기타안건

(협동조합의 상황에 따른 논의내용과 결정내용을 기재)

바. 폐회 선언

의장이 이대로 창립총회를 폐회해도 될지 묻다.

이에 참석자 모두가 찬성하므로 의장이 ○○○○협동조합의 창립총회 폐회를 선언하다.

(시 분)

이상의 내용으로 창립총회를 진행하고 그 경과와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서명날인인이 기명날인하다.

발기인대표 : ○ ○ ○ (인)
이 사 장 : ○ ○ ○ (인)
서명날인인 : ○ ○ ○ (인)
○ ○ ○ (인)
○ ○ ○ (인)

참고 양식

1. 설립동의서

설 립 동 의 서

본인은 (가)○○○○협동조합의 지향과 목적에 동의하므로, 그 설립에 참여하고자 설립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출자금 약정 : 구좌(1구좌 ○○○원)
■ 주 소 :
■ 전화(핸드폰) :
■ 주민등록번호 :
■ 이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가)○○○○협동조합
발 기 인 대 표 귀하

2. 출자금 증서

No.

출 자 금 증 서

가 입 연 월 일 : 년 월 일

귀하 최종출자납입일 : 년 월 일

금 원정 (₩)

위의 금액을 아래 약관에 의하여 수납하고 이 증서를 발행합니다.

년 월 일

○○○○협동조합 이사장 (인)

약 관

1. 이 출자금은 탈퇴시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환불하여 드립니다.
2. 이 출자금으로 조합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지 못합니다.
3. 이 증서는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이 증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조합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5.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은 2년간 환불요구가 없을 때에는 조합의 수익금으로 처리됩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 협동조합 담당부서

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서울특별시	경제진흥실 일자리기획단 사회적경제과	2133-5486
강남구	기획경제국 일자리정책과	3423-5593
강동구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	3425-5822
강북구	주민생활국 일자리지원과	901-6382
강서구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2600-6327
관악구	지식문화국 일자리사업과	879-5762
광진구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	450-7054
구로구	기획경제국 일자리지원과	860-2125
금천구	기획경제국 일자리정책과	2627-2022
노원구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2116-3495
도봉구	복지환경국 일자리경제과	2091-3173
동대문구	기획재정국 일자리창출과	2127-3576
동작구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820-9591
마포구	주민생활국 일자리진흥과	3153-8656
서대문구	경제발전기획단	330-8671
서초구	주민생활국 일자리지원과	2155-8740
성동구	기획재정국 일자리정책과	2286-6392
성북구	기획경제국 사회적경제과	920-2313
송파구	일자리지원담당관	2147-3100
양천구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2620-4815
용산구	주민생활지원국 고용정책과	2199-7195
영등포구	재정국 일자리정책과	2670-3961
은평구	재정경제국 일자리정책과	351-6878
종로구	복지환경국 일자리경제과	2148-2272
중구	기획재정국 취업지원과	3396-5693
중랑구	주민생활지원국 일자리창출추진단	2094-2924

정부 협동조합 담당부처

연번	소속	담당부서	연락처
1	기획재정부	(법령)협동조합정책과	044-215-5912
		(설립)협동조합운영과	044-215-5931
2	교육부	(교육)평생학습정책과	02-2100-6378
		(과학)과기인재기반과	02-2100-6867
3	외교통상부	문화교류협력과	02-2100-7727
4	통일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00-5714
5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02-2100-3496
6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실	02-748-6556
7	안전행정부	지역경제과	02-2100-2979
8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3704-9285
9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044-201-1572
10	지식경제부	행정관리담당관	02-2100-3924
11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023-7815
12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6392
13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2-6902-8456
14	여성가족부	법무감사정보화담당관	02-2075-4593
15	국토해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3254
16	감사원	행정지원실(서무행정팀)	02-2011-3820
17	방송통신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750-1651
18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정책조정과	02-724-8652

연번	소속	담당부서	연락처
19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지원과	02-397-7238
20	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	02-2100-2562
21	국가보훈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020-5132
22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044-200-4410
23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56-9852
24	국민권익위원회	법무감사담당관	02-360-6805
25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7988
26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70-4056-7511
27	통계청	통계정책과	042-481-2426
28	검찰청	형사1과	02-3840-2264
29	병무청	운영지원과	042-481-2834
30	방위사업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079-6224
31	경찰청	경무과	02-3150-0706
32	소방방재청	행정관리담당관	02-2110-5124
33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042-481-4806
34	농촌진흥청	행정법무담당관	031-299-2944
35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	042-481-4283
36	중소기업청	판로정책과	042-481-4394
37	특허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8567
38	식품의약품안전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3-719-1525
39	기상청	기상산업정책과	02-2181-0843
40	해양경찰청	기획담당관	032-835-2323
4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운영지원과	044-860-9024

협동조합 유관기관 및 지원기관

권역	단체명	홈페이지
1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http://se.seoul.go.kr/cooperative/center.action
2	한국협동조합연구소	www.coops.or.kr
3	사회투자지원재단	www.ksif.kr
4	한살림서울생협	www.seoul.hansalim.or.kr
5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www.icoop-cdc.coop
6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www.medcoop.or.kr
7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www.wonjuand.com
8	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www.co-op.or.kr
9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www.gongdong.or.kr
10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www.icoop.re.kr
11	한살림부설 모심과살림연구소	www.mosim.or.kr
12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cafe.daum.net/socialesc
13	신나는조합	www.joyfulunion.or.kr
14	신용협동조합	www.cu.co.kr
15	행복중심생협연합회	www.happycoop.or.kr
16	두레생협연합회	www.dure.coop
17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www.icoop.or.kr
18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	www.handurae.org
19	사회연대은행	www.bss.or.kr
20	한국사회투자재단	www.social-investment.kr
21	서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www.seoulmaeul.org
2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www.socialenterprise.or.kr
23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cooperatives.go.kr

※ 서울시 협동조합정보 사이트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협동조합" 검색〉

– 설립신고 http://economy.seoul.go.kr/archives/14211
– 자료 공유 http://club.seoul.go.kr/coophope2012
– 운영사례집 http://economy.seoul.go.kr/archives/23713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14.1.21] [법률 제12272호, 2014.1.2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협동조합정책과) 044-215-5912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이 2013.12.26. 국회에서 의결되어 2014.1.21.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개정 전.후 조항을 함께 실었으며, 개정 조항과 시행시기는 다른 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 ·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 · 자립적 ·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 생산 · 판매 ·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 ·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명칭) 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제3조(명칭) 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④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그 명칭에 국가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명칭을 사용하여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21〉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그 명칭에 제4항에 따른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가나 지역에 대한 대표성 등에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그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시행일 : 2014.7.22] 제3조

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 협동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설립 목적)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구성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을, 연합회의 경우 회원을 말한다. 이하 "조합원등"이라 한다)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등의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원칙)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등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협동조합등의 책무)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조합원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 · 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등과 협의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 · 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 ·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시행일 : 2014.7.22] 제10조

제10조의2(경영 지원)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 · 운영에 필요한 경영 · 기술 · 세무 · 노무(勞務) ·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1]

[시행일 : 2014.7.22] 제10조의2

제10조의3(교육훈련 지원)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 ·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조합원등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1]
[시행일 : 2014.7.22] 제10조의3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립과 인가 ·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의 협의 ·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의 활동현황 · 자금 · 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발전 전략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상호협력 및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결과 및 협동조합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과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와 협의 ·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립과 협의 ·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의 활동현황 · 자금 · 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일 : 2014.7.22] 제11조

제12조(협동조합의 날) ① 국가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하며,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지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1〉

[시행일 : 2014.7.22] 제13조

제14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제4조제1항의 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인"은 "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본다.

② 제4조제2항의 사회적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제1편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

제2장 협동조합

제1절 설립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1〉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시행일 : 2014.7.22] 제15조

제15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받은 시 ·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
[시행일 : 2014.7.22] 제15조의2

제16조(정관) ①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 ·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③ 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 ·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1.21〉

제17조(규약 또는 규정) 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① 발기인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신설 2014.1.21〉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등) ① 발기인은 제15조의2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신설 2014.1.21〉

[제목개정 2014.1.21]

[시행일 : 2014.7.22] 제18조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①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제2절 조합원

제2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21조(가입) ①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출자 및 책임)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④ 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23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 · 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탈퇴)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조합원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제명)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27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절 기관

제28조(총회) ① 협동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 안건 ·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 ·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 · 분할 ·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1〉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 ·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 · 분할 ·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8의2.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9.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21〉

[시행일 : 2014.7.22] 제29조

제3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1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협동조합의 합병 ·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31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④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⑤ 대의원의 임기, 선출방법 및 자격 등 대의원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⑥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협동조합의 합병 ·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시행일 : 2014.7.22] 제31조

제32조(이사회) ① 협동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이사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2조(이사회) ① 협동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이사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시행일 : 2014.7.22] 제32조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 ·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4조(임원) ①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 · 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제34조(임원) ①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 · 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

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시행일 : 2014.7.22] 제34조

제35조(임원의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14.1.21〉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1〉

[제목개정 2014.1.21]

[시행일 : 2014.7.22] 제36조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 · 운영하고 있는 기관 · 단체 ·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 · 물품 ·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 · 물품 ·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을 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 ·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 팩스 · 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 · 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 · 운영하고 있는 기관 · 단체 ·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 · 물품 ·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 · 물품 ·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을 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 ·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 팩스 · 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시행일 : 2014.7.22] 제37조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① 협동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 · 규약 ·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협동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42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협동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2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협동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34조제5항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때에는 총회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4.1.21〉
[시행일 : 2014.7.22] 제42조

제43조(감사의 대표권) 협동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협동조합을 대표한다.

제43조(감사의 대표권) ①협동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협동조합을 대표한다. 〈개정 2014.1.21〉

② 제34조제5항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소송을 하는 때에는 협동조합,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협동조합을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시행일 : 2014.7.22] 제43조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사업의 성격과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사업의 성격과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⑤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신설 2014.1.21〉

[시행일 : 2014.7.22] 제44조

제4절 사업

제45조(사업) ①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 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②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 · 요건 · 절차 · 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46조(사업의 이용)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절 회계

제47조(회계연도 등) ① 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협동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8조(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9조(운영의 공개) ① 협동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정관 · 규약 · 규정, 총회 · 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한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49조(운영의 공개) 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총회 · 이사회의 의사록
3. 조합원 명부
4. 회계장부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동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21〉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④ 삭제 〈2014.1.21〉

[시행일 : 2014.7.22] 제49조

제49조의2(경영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 · 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협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

[시행일 : 2014.7.22] 제49조의2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이하 “임의적립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②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이하 “임의적립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 2014.7.22] 제50조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50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①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협동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53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5조(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절 합병 · 분할 · 해산 및 청산

제56조(합병 및 분할) ① 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협동조합이 합병할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합병신고를, 분할 후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신고를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⑥ 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제56조(합병 및 분할) ① 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협동조합이 합병할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합병신고를, 분할 후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신고를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

⑤ 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⑦ 제6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 ·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⑧ 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

[시행일 : 2014.7.22] 제56조

제57조(해산) 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 분할 또는 파산

②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제58조(청산인) ①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59조(잔여재산의 처리) 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제59조(잔여재산의 처리) ①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14.1.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조직변경 시 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한 사내유보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급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다른 협동조합에 기부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시행일 : 2014.7.22] 제59조

제60조(「민법」 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 · 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 · 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제60조의2(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105조의2에서 같다)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 · 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법인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④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50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⑤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 · 인가 · 허가 · 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⑥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등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1]

[시행일 : 2014.12.1] 제60조의2

제7절 등기

제61조(설립등기) ①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21〉

1.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8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63조(이전등기) ① 협동조합이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제64조(변경등기) ①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65조(합병등기) ① 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6조(해산등기) ① 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7조(청산인등기) ①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청산종결등기) 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법인등이 제60조의2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제60조의2제6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조직변경 전의 법인등은 해산등기를, 협동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1]

[시행일 : 2014.12.1] 제68조의2

제69조(등기부) 등기소는 협동조합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0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제1절 설립

제71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제71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

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1〉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시행일 : 2014.7.22] 제71조

제71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제71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반려하거나 보완 요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

[시행일 : 2014.7.22] 제71조의2

제7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보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제2절 회원

제73조(회원의 자격) ① 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으로 한다.

②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4조(탈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5조(의결권 및 선거권) 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 참여량, 출자좌수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76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원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개정 2014.1.21〉

제3절 기관

제77조(총회) ① 연합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8조(임원)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79조(준용규정) 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37조 중 "조합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제4절 사업

제80조(사업) ① 연합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원에 대한 지도 · 지원 · 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 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3.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 · 연구 및 홍보 사업
② 연합회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 · 요건 · 절차 · 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80조의2(공제사업) ① 제8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채무 또는 의무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②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요건 및 절차 등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1]
[시행일 : 2014.7.22] 제80조의2

제81조(사업의 이용) ① 연합회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홍보 또는 재고물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제81조(사업의 이용) ① 연합회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홍보 또는 재고물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0조의2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

[시행일 : 2014.7.22] 제81조

제5절 회계

제8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8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시행일 : 2014.7.22] 제82조

제6절 합병 · 분할 · 해산 및 청산

제83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합병 · 분할 ·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 · 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보고, 제56조제4항 중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제71조 및 제72조"로 보며, 제58조제4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제83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합병 · 분할 ·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1항, 제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 · 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보고, 제56조제4항 중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는 "제71조, 제71조의2 및 제72조"로 보며, 제58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시행일 : 2014.7.22] 제83조

제7절 등기

제84조(준용규정) 연합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1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제84조(준용규정) 연합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1조부터 제68조까지,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개정 2014.1.21〉

[시행일 : 2014.7.22] 제84조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제1절 설립

제85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인가에 관한 신청 절차와 조합원 수, 출자금, 그 밖에 인가에 필요한 기준, 인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삭제 〈2014.1.21〉

제86조(정관)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 ·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③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1.21〉

제87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① 발기인은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신설 2014.1.21〉

제88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

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본다.

제2절 조합원

제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90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89조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91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3절 기관

제92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92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개정 2014.1.21〉

[시행일 : 2014.7.22] 제92조

제4절 사업

제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 · 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취약계층에게 복지 · 의료 ·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3. 국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1〉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신설 2014.1.21〉

제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1. 지역(시 · 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 · 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 · 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 · 의료 ·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4. 국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1〉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신설 2014.1.21〉

[시행일 : 2014.7.22] 제93조

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제9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② 제1항의 사업에 따른 소액대출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사업의 이용)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94조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건 · 의료 사업을 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보건 ·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고의 산정기준, 보건 · 의료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조합원이 아닌 자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사업의 이용) 사회적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일 : 2014.7.22] 제95조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

[시행일 : 2014.7.22] 제95조의2

제5절 회계 등

제96조(운영의 공개)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 · 규약 · 규정, 총회 · 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은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96조(운영의 공개)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총회 · 이사회의 의사록
3. 조합원 명부
4. 회계장부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

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21〉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④ 삭제 〈2014.1.21〉

[시행일 : 2014.7.22] 제96조

제96조의2(경영공시)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제9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회적협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

[시행일 : 2014.7.22] 제96조의2

제97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7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 2014.7.22] 제97조

제98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9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99조(부과금의 면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제100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및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6절 합병 · 분할 · 해산 및 청산

제101조(합병 및 분할)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

아야 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⑤ 삭제 〈2014.1.21〉

⑥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⑦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제101조(합병 및 분할)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⑤ 삭제 〈2014.1.21〉

⑥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5. 협동조합

⑧ 제7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 ·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⑨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

[시행일 : 2014.7.22] 제101조

제102조(해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 분할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제103조(청산인)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제104조(잔여재산의 처리)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부채 및 출자금을 변

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 · 공익법인
4. 국고

제105조(「민법」 등의 준용)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 · 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 · 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와 제108조의2에서 같다) 및 법인등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 · 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④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97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⑤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⑥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1]

[시행일 : 2014.12.1] 제105조의2

제105조의3(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21]

[시행일 : 2014.12.1] 제105조의3

제7절 등기

제106조(설립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8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07조(합병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8조(해산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0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이 제105조의2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제105조의2제6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조직변경 전의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은 해산등기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1]

[시행일 : 2014.12.1] 제108조의2

제109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제110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110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개정 2014.1.21〉

[시행일 : 2014.7.22] 제110조

제8절 감독

제111조(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상황 · 장부 ·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85조에 따른 설립인가 및 절차에 적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의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사 · 검사 ·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⑥ 삭제 〈2014.1.21〉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2회 이상 제111조제5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1.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93조제1항에 따른 주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2회 이상 제1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시행일 : 2014.7.22] 제112조

제113조(청문)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제114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회적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제115조(준용규정)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2장 중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 제48조,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보며,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보고,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37조 중 "조합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3장 중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0조의2 및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개정 2014.1.21〉

③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4장 중 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9조까지 및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8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보며,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는 "제114조 및 제115조"로 보고,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제115조(준용규정)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2장 중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보며,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보고,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37조 중 "조합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3장 중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0조의2 및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개정 2014.1.21〉

③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4장 중 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102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9조 및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8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보며,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는 "제114조 및 제115조"로 보고,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시행일 : 2014.7.22] 제115조

제6장 보칙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 등으로서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위탁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일 : 2014.7.22] 제116조제3항

제7장 벌칙

제117조(벌칙)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2. 투기를 목적으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5조제3항, 제50조제1항 · 제3항,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 제58조, 제80조제3항, 제97조제1항 · 제3항, 제98조, 제103조 및 제104조(제82조 · 제83조 · 제100조 또는 제1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경우
3.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37조(제79조 · 제92조 및 제1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제117조(벌칙)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2. 투기를 목적으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제45조제3항, 제50조제1항 · 제3항,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 제58조, 제80조제3항, 제97조제1항 · 제3항, 제98조, 제103조 및 제104조(제82조 · 제83조 · 제100조 또는 제1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경우
3.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37조(제79조 · 제92조 및 제1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시행일 : 2014.7.22] 제117조

제118조(양벌규정)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9조(과태료) ① 제3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제76조 · 제91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
2. 제23조제1항(제9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결권 · 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3. 제46조, 제81조 및 제95조(제1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원등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등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4. 제94조를 위반하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 · 등기를 게을리한 때
2. 제49조제2항(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때
3. 제49조제3항 및 제4항(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6조제3항 및 제4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때
4.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부과 · 징수한다.

제1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한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
2.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한 자
3. 제3조제5항에 따른 명칭의 사용 금지 또는 수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제76조 · 제91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
2. 제23조제1항(제9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결권 · 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3. 제46조, 제81조 및 제95조(제1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원등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등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4. 제94조를 위반하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1. 신고 · 등기를 게을리한 때
2. 제49조제2항(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때

3. 제49조(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9조의2(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6조(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의2(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때
4.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부과 · 징수한다.

[시행일 : 2014.7.22] 제119조

부 칙

〈법률 제11211호, 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조합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법인이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가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71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71조 및 제72조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84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단법인과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연합회는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8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은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14조에서 정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14조, 제115조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15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단법인과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제3조(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라 설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협동조합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272호, 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4항,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36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37조제4항, 제44조제3항ㆍ제4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61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71조제3항, 제76조 전단, 제79조 후단, 제85조제5항, 제86조제2항ㆍ제3항, 제87조제4항, 제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4조제1항, 제101조제5항, 제102조제2항, 제111조제6항, 제112조제2항, 제114조제3항, 제11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116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0조의2, 제68조의2, 제105조의2, 제105조의3 및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 제18조제1항, 제56조제4항, 제71조의2 및 제83조 후단(제15조의2 및 제71조의2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자 1좌의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7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6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설립신고를 하거나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의원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제3항(제79조,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제5항(제79조,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선거운동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제79조,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선거일이 공고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6조(시정조치 명령 위반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1항제2호(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11조제4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출자 1좌의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2항 및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정관에서 출자 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지 아니한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6조제2항(제7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6조제2항(제115조제

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출자 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8조(대의원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의원총회를 두고 있는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31조제3항(제79조,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의원총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의원총회를 두고 있는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31조제5항(제79조,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의원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9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임직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임원 또는 채용된 직원으로서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사람은 제44조제5항(제79조,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임직원의 직을 사직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사유로 한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서는 제112조제1항제1호(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주 사업을 개시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벌칙 및 과태료 부과기준

○ 벌칙

*2014. 7. 22부터는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 적용

협동조합 기본법 제117조(벌칙)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2. 투기를 목적으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5조제3항,제50조제1항·제3항, 제51조부터 53조까지,제55조,제58조, 제80조제3항,제97조제1항·제3항, 제98조, 제103조 및 제104조(제82조·제83조·제10조 또는 제1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경우
	3.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37조(제79조·제92조 및 제1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 과태료

위반 행위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위반	2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100	200
나.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22조제2항(법 제76조 · 제91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	법 제119조 제2항제1호	100	200
다.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23조제1항(법 제9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결권 · 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법 제119조 제2항제2호	100	200
라.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46조, 제81조 및 제95조(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원등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등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법 제119조 제2항제3호	100	200
마.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법 제49조제2항(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96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때	법 제119조 제3항제2호	50	100

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법 제49조제3항 및 제4항(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96조제3항 및 제4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때	법 제119조 제3항제3호	50	100
사.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94조를 위반하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	법 제119조 제2항제4호	100	200
아.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신고 · 등기를 게을리한 때	법 제119조 제3항제1호	50	100
자.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법 제119조 제3항제4호	50	100
차.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때	법 제119조 제3항제5호	50	100

Cooperative

06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1년을 돌아보며

–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운영자 소감

서북권역

협동조합 상담을 시작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나갑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까 우려도 있었지만, 유래없는 협동조합 열풍 속에서 어느덧 한살림에서 상담한 것만 해도 4,0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담지원센터는 희망자가 필요로 할 때마다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이자, 어떤 이야기든 부담없이 나눌 수 있는 친구 같은 역할을 맡고자 했습니다.

협동조합 상담은 공감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내용을 상담해야 할지 정확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항상 그 요구에 앞서 욕구를 이해해야 합니다. 상담자 태도 매뉴얼도 있지만 딱딱하고 형식에 매인 대응은 공감을 해치는 적이라 생각해서 가급적 편안하게 응대하려고 했고, 질문 자체에 답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예상되는 상황과 문제점도 파악해서 안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지나친 간섭으로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답형 대화로 끝난 후의 허탈감과 자괴감이 다시 마음을 다잡게 했습니다.

상담하면서 협동조합을 통해 이루려는 꿈에 같이 부풀어오르기도 하고, 아픈 사연과 힘든 상황에 마음 아프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억지로 꾸미는 일을 말리느라 목소리를 높이다가 자리가 어색해지기도 했고, 정부에서 하라고 했으면서 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냐며 호통치는 분들 앞에서 난감할 때도 많

았습니다. 분명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 일을 통해 새로운 공부도 되고 기운도 얻으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첫째는 협동조합이 하나의 동인(動因)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힘들다, 희망이 안보인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적어도 여기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있고, 또 자신감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이루고 싶은 삶이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이런 분들에게 신나게 움직이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하지만 현실은 더욱 냉철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이라는 제도가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사회에서, 시장에서 굳건히 살아가기 위한 힘을 스스로 갖추지 않으면 안됩니다. 실지로 많은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지만, 정상적으로 조직과 사업이 운영되는 곳은 많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꿈을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냉엄한 현실을 이기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업화시킬지 고민하고, 현장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함께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과 협동해 가면서 조금씩 꿈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닐까요?

한살림서울생협 노 욱

동북권역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가 운영된 지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에서 설립된 협동조합이 1천여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상담지원센터의 상담과 교육이 협동조합의 원리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동조합이 설립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설립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두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운동성(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사업성(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가지 중 하나에만 집중하면 온전한 협동조합이 될 수 없습니다.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업성만 강조한다면 일반 사업체와 다를 바 없고, 운동성만 강조한다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서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상담과 교육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서로에게 희망이 되고 믿음이 되는 사람이 모여서 고민하고 논의하고 힘을 모아야 협동조합이 자립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하나의 성공한 협동조합(1844년 로치데일공정선구자조합)이 만들어지기까지 수백 개의 협동조합이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깊이 고민하고 차분하게, 꾸준히,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한다면 협동조합으로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같이 노력해서 협동조합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의 삶의 문화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사회투자지원재단 김 종 일

서남권역

상담지원센터의 1년은 짧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억들이 납니다. 상담 오신 분들을 되짚어 보면 사업에 실패하고 새로운 재기를 꿈꾸는 사장님부터 한국으로 결혼온 이주여성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IT개발자, 디자이너, 출판인, 번역인, 예술가, 기자, 약사, 수의사, 무속인 등등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모두 다른 사업으로 협동조합을 꿈꾸었지만 혼자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 힘을 모으고자 했던 의지는 한결 같았습니다. 때론 골목상권으로 들어오는 대자본에 맞선 자영업자들의 선택이기도 했고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협동조합에 많은 공적자금이 몰릴 것으로 기대해 상담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도 제법 많았습니다. 협동조합의 원칙과 가치, 민주적 의사결정의 특징, 주식회사의 소유구조와의 차이 등을 한참 설명하고 나서야 지원금이 얼마냐고 묻고 그냥 돌아가 버릴 때는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덕에 협동조합을 접하고 이해한 이들이 더 많아졌기를 기대해 봅니다. 상담지원센터가 협동조합이 경험하는 최초의 지원책이라면 협동조합들이 스스로 잘 걸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다양한 인프라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말로 모든 협동조합들의 노고를 위로합니다. 모든 협동조합에 건투를 빕니다.

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김 현 하

동남권역

상담을 하면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협동조합으로 설립하고자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참으로 세상에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이익만이 아닌 함께 나누고 만들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곤 합니다.

얼마 전 구두를 만드시는 분이 찾아오셨는데 구두 만드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이일을 어떻게 잘 이어나갈 수 있을까 늘 고민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협동조합을 알게 되었고 '바로 이거구나!' 하는 생각으로 상담을 하시게 되었답니다. 이제 60대가 되신 분인데도 남다른 열정으로 구두를 함께 만들고 그 일의 맥을 이어갈 사람들을 교육하고자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분은 그 동안 꾸준히 협동조합을 공부해 왔으며 좋은 협동조합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 노력하시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참으로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나 자신이 부끄러워지곤 하여 어떻게든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더 노력하게 됩니다.

내가 상담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가슴 따뜻해지는 배움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분이 상담을 하실지 기대를 하며 좀 더 도움이 되고자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윤 미 례

협동조합 상담사례집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제 작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과

기획 · 원고 사회투자지원재단
한살림서울생협
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한국협동조합연구소

발행일 2014년 2월

편집 · 디자인 사회적기업 (주)광고발전소

본 출판물은 비매품이며,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기업enterprise을 통해 공동의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association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1995년)〉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대표전화 1544-5077